

**경찰 관서별 청렴도 평가모형 개발 및
조사설계 연구**

**경찰 관서별 청렴도 평가모형 개발 및
조사설계 연구**

치안정책연구소 정책기획연구실

연구관 이 상 수

목 차

<연구결과의 요약>	1~26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기대효과	7
제3절 연구의 방법 및 내용	8
제2장 경찰 관서별 청렴도 평가모형	12
제1절 경찰 대민청렴도 측정모형의 개발 및 조사방식	12
1. 경찰 대민청렴도 측정모형의 개발	12
1) 경찰 대민청렴도 측정지표의 구성체계	12
(1) 경찰 대민청렴도 측정모형의 지표체계와 설문문항 구성	12
(2) 체감청렴도 측정지표	15
(3) 잠재청렴도 측정지표	16
(4) 평가지표의 조작적 정의	17
(5) 설문항목별 평가방식	26
2) 지수산정 방식	28
(1) 응답자개별평가형 문항 계산 산식	28
(2) 기관총합평가형 문항 계산 산식	29
(3) 경찰 청렴도 계산 산식	33
2. 조사방법	37
1) 모집단 및 표본	37
(1) 모집단	37
(2) 표본구성 및 기관별 할당방법	38
2) 조사 대상기관 및 조사표본 규모	39
제2절 내부 청렴역량도 측정모형의 개발 및 조사방식	42
1. 내부 청렴역량도 측정모형의 개요	42
1) 내부 청렴도 측정 목적	42

2) 측정 체계	42
3) 측정 대상기관	44
4) 내부 청렴역량지수 산출방식	44
2. 조사표본규모 및 표본추출	44
1) 조사표본 규모	44
2) 직원명단 제출 범위	45
3) 표본추출 방식 및 기준	46

제3장 경찰 관서별 청렴도 조사설계47

제1절 경찰청렴도 조사의 체계47

1. 경찰 청렴도 조사의 개요	47
1) 조사의 성격과 목적	47
2) 조사내용	48
3) 측정 체계	49
(1) 경찰청렴역량 측정모델의 측정체계	49
(2) 기관별 청렴도 산출방식	52
4) 대민 청렴도 측정대상 업무	53
(1) 측정대상업무 선정기준	53
(2) 경찰 업무 중 부패취약 업무분야	54
(3) 조사대상 업무분야	55
2. 경찰 청렴도 조사의 추진방법	58
1) 설문조사방법 및 유의사항	58
(1) 대민 청렴도 조사방식	58
(2) 내부 청렴역량도 조사방식	58
(3) 조사와 분석·해석의 이원화	59
(4) 조사표본 누락방지 및 측정결과 검증	59
2) 중요도 조사	60
3) 자료제출 대상 경찰서 선정방법	61

제2절 조사결과의 분석사항 및 조사추진일정62

1. 조사결과의 분석사항	62
2. 설문조사 추진일정	64

제4장 조사결과의 활용방안	65
제1절 조사결과의 정책적 활용방안	65
제2절 조사 결과 시상·포상 방법	67
제3절 조사결과의 발표방법	68
1. 조사결과 발표방법의 의의	68
2. 경찰 청렴도 조사결과의 발표방법	68
1) 조사결과 발표방법 대안 검토	69
2) 발표방법 최적 대안	70
제4절 조사결과의 정책적 환류 제고방안	72
1. 청렴도 측정의 원칙	72
2. 청렴도 향상을 위한 과학적 정보의 산출	73
3. 제도적·정책적 활용방안	73
4. 향후 발전방향	75
<부록 1> 조사자료 수집·표본집단 구성	76
I. 피평가 기관 협조사항	76
1. 측정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출	76
2. 표본관리 등 신뢰도 저해행위 금지	76
3. 측정업무별 명부 제출관련 협조	76
II. 자료 제출서식	79
<붙임 1> 총 괄 (○○경찰서)	79
<붙임 2> 대민업무별 명부 작성양식(표지)	79
<붙임 3> 측정대상 업무별 명부 작성양식	80
<붙임 4> 내부업무 청렴역량도 측정을 위한 명부 작성양식	82
<부록 2> 경찰청렴도 측정을 위한 설문(안)	83
I. 경찰 대민청렴도 측정을 위한 설문지	83
II. 경찰 내부청렴역량 조사 설문지	90

<표 차례>

<표 1-1> 최근 5년간 경찰관 범죄 현황	1
<표 1-2> 경찰의 민생치안 강화방안	3
<표 2-1> 경찰 대민청렴도 평가모형 지표체계	14
<표 2-2> 체감청렴도 측정지표의 구성체계 및 내용	15
<표 2-3> 잠재청렴도 측정지표의 구성체계 및 내용	16
<표 2-4> 경찰 대민청렴도 평가모형 지표체계	26
<표 2-5> 7점 척도의 100점 환산 방법	29
<표 2-6> 조사대상자 규모에 대비한 전체 금품제공 건수의 비율에 따른 점수배정 ...	31
<표 2-7> 제공된 금품의 규모별 점수배정	32
<표 2-8> 금품제공 규모측면에서의 점수	32
<표 2-9> 청렴도, 체감청렴도 및 잠재청렴도 산정방식	33
<표 2-10> 측정대상기관 현황 및 표본 할당 규모	41
<표 2-11> 전국 경찰서·지구대 현황(2008년 5월 현재)	42
<표 2-12> 경찰 내부청렴역량도 평가모형 측정체계	43
<표 2-13> 내부청렴역량도 급지별 표본 할당 규모	44
<표 3-1> 경찰 청렴역량 평가모형 측정체계 중 대민청렴도 평가모형	50
<표 3-2> 경찰 청렴역량 평가모형 측정체계 중 내부청렴역량 평가모형	51
<표 3-3> 척도별 점수환산 현황	52
<표 3-4> 조사대상 업무	56
<표 3-5> 설문조사 추진일정	64
<표 4-1> 소속 경찰서 규모별 조사결과 시상·포상의 유형군	67

<그림 차례>

<그림 1-1> 연구의 진행도	10
<그림 1-2> 연구추진 일정	11
<그림 2-1> 경찰 청렴도의 구성	13
<그림 2-2> 경찰 대민청렴도 평가모형의 구조	36

경찰 청렴도 평가모형 개발 및 조사설계 연구결과 요약

I 경찰 관서별 청렴도 조사 추진 개요

1. 경찰 관서별 청렴도 조사의 의의와 내용

□ 조사의 배경과 목적

- “경찰관서 청렴도 측정 모형”을 경찰행정분야에 실질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치안행정의 청렴성과 투명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 “경찰관서 청렴도 측정 모형”은 공직부패를 척결하기 위한 새로운 방안의 하나로서, 개별 행정기관 또는 하위업무분야(조직단위)의 “부패실태 및 부패발생가능성”에 입각하여 “행정기관 또는 하위업무분야(조직단위)별 “체감청렴지수”와 “잠재청렴지수”를 포괄하는 청렴지수”를 산출함
- 경찰행정 업무분야 및 주변분야에 대한 조사결과와의 추이분석을 통하여 지방경찰청별·경찰서별·업무별 청렴지수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함

□ 조사의 내용

(1) 경찰행정 전반의 청렴지수 등 부패관련 실태와 추세

- “경찰행정 전반에 대한 청렴지수”와 함께 경찰행정 전반의 부패실태 및 부패발생 개연성 등을 중심으로 한 “부패에의 노

출된 상태” 를 규명하고, 이를 기존 조사결과(전년도 조사결과 및 외부기관(국가청렴위원회) 조사결과)와 비교 분석함

- 청렴지수를 비롯한 각종지수의 파악·분석
 - 경찰서별·업무별 청렴지수와 이를 구성하는 체감청렴지수 및 잠재청렴지수 등 하위지수를 파악하고, 부패관련 실태를 보다 정확하게 반영하는 차원 및 세부설문항목별 결과를 분석함

(2) 경찰서별업무별 청렴지수 등 부패관련 실태와 추세

- 경찰행정 업무분야별·경찰서별 부패실태 파악
 - 조사단위가 되고 있는 경찰서 및 경찰행정 업무분야별로 일반민원인들을 대상으로 업무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부패관련 실태를 비롯한 문제요소를 파악하고자 함
- 경찰서별·업무별로 직면하고 있는 부패실태와 함께 부패발생가능성을 규명하고, 이를 전년도 경찰청렴도 조사결과, 경찰행정 고객만족도 조사, 그리고 국가청렴위원회의 청렴도 조사 등 기존 조사결과와 비교 분석함
 - 경찰서별 부패실태 규명 및 추세 비교
 - 경찰행정 업무분야별 부패실태 규명 및 추세 비교

(3) 경찰서별업무별 내부청렴역량지수 파악

- 경찰관서의 반부패·청렴역량에 대한 조직 구성원들의 인식과 경험을 측정
 - 측정 결과 나타난 취약부문에 대한 효율적인 개선방안의 수립과 추진을 지원
 - ⇒ 기관의 반부패·청렴 역량 강화, 내부 부패 척결 및 청렴도 제고노력을 유도
- 경찰관서의 부패방지 등 청렴성 확보를 위한 제도 구축 및 운영, 문화·부패통제, 공직자의 행태 및 인사투명성 등 3개 분야 측정

2 경찰 청렴도 평가 모형(Police Integrity Evaluation Model; PIEM) 개발

□ 경찰청렴역량 측정모델의 측정체계

경찰청렴도 평가모형=대민청렴도평가지표+내부청렴역량평가지표

- **대민 청렴도 지수** : 경찰업무분야 중 민원발생 및 부패발생 소지가 높은 4대 단속·허가분야 및 2대 민원발생 다발 분야에 걸쳐 부패행위가 없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처리가 이루어진 정도에 대한 민원인의 경험·인식 정도를 측정
 - 4대 단속·허가분야: 유해업소 단속, 교통단속(음주·무면허 운전자 단속 및 일반법규 위반 단속), 교통사고 조사, 총포·도검·화약류 등 소지허가
 - 2대 민원발생 다발 분야: 계약관리, 경비업 인허가 및 갱신
※ '09년 사행행위 추가 예정

- **내부 청렴역량 지수** :
 - 경찰관서의 부패방지 등 청렴성 확보를 위한 제도 구축 및 운영, 문화부패통제, 공직자의 행태 및 인사투명성 등 3개 분야 측정

<표 1> 경찰 청렴역량 평가모형 측정체계

차원	영역	항목	평가지표(설문항목)	대상				
경찰청렴역량평가모형	대민청렴도지수 측정모형	체감청렴도	개인적 경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품·향응 제공 빈도 금품·향응 제공 규모 	민원인			
			개인적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품·향응 제공의 효과 부패수준 변화 				
		잠재청렴도	행정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업무처리 기준·절차의 복잡성 업무처리 기준·절차 등의 정보공개 정도 업무처리과정의 명확성 업무처리시 불필요한 요구 정도 				
				부패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불복·이의제기의 용이성 부패신고의 용이성 부패방지 노력도 		
	업무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품·향응 제공 수용도 금품·향응 제공의 관행화 정도 추가 면담의 필요성 		
				업무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담당자의 업무처리 공정성 담당자의 금품·향응 수수 기대 정도 업무처리 행태에 대한 민원인 해석 정도 		
	내부청렴역량지수 측정모형		제도 구축·운영			부패통제 제도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패방지를 위한 행동기준의 구체성 자체감사계획 수립의 구체성 	경찰관
				부패통제 제도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패방지를 위한 행동기준의 운영 실효성 내부고발제도의 운영 실효성 공정한 직무수행의 확보제도 운영 실효성 이해관계 직무회피 제도 운영의 실효성 업무처리 기준·절차 및 처리과정의 정보공개 수준 개인 및 부서의 평가시 청렴성 반영 정도 		
		조직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직내 부패행위의 관행화 정도 조직내 공/사 구분의 명확화 정도 조직내 부패에 대한 용인정도 		
						부패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패방지를 위한 윤리규정에 대한 직원들의 내면화 정도 민원인의 이의 제기에 대한 충실한 처리 정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체 사고 축소·목살 방지 개선 노력 정도 부패방지를 위한 기관장 노력도 	
						자체감사 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직내 감사체계 운영 효과성 기관장의 자체감사 실효성 제고 노력 정도 감사 결과의 반영 정도 	
		공직자 행태·인사 투명성	간부·직원 청렴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간부들의 업무 추진 공정성·투명성 정도 일반직원들의 업무 추진 공정성·투명성 정도 				
			인사 투명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승진·전보시 금품·향응 제공 정도 인식 금품·향응이 인사결과에 미친 영향 정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승진·전보시 금품향응 제공 경험 정도 금품·향응 제공시기, 제공이유, 개선방안 								

<표 2> 경찰 대민청렴도 평가모형 지표체계

평가차원	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가지표(설문항목)	문항번호	권익위 지표비교	평가방식
대민청렴도지수	부패수준에 대한 체감 청렴도	개인적 경험	금품·향응 제공 빈도	문14-1)	○	기관총합평가
			금품·향응 제공 규모	문14-2)	○	
		개인적 인식	금품·향응 제공의 효과	문14-3)	×	응답자 개별평가형
			부패수준 변화	문15)	×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잠재 청렴도	행정제도	업무처리 기준·절차의 복잡성	문 1)	○	
			업무처리 기준·절차 등의 정보공개 정도	문 2)	○	
			업무처리 과정의 명확성	문 3)	×	
			업무처리시 불필요한 요구 정도	문 4)	×	
		부패통제	불복·이의제기의 용이성	문 5)	○	
			부패신고의 용이성	문 6)	×	
			부패방지 노력도	문 7)	×	
		업무환경	금품·향응제공 수용도	문 8)	×	
			금품·향응 제공의 관행화 정도	문 9)	○	
			추가 면담의 필요성	문10)	○	
	업무태도		담당자의 업무처리 공정성	문11)	○	
담당자의 금품·향응 수수 기대 정도		문12)	○			
업무처리 행태에 대한 민원인 해석 정도		문13)	×			

※ 주: 국민권익위원회 대민·대기관 청렴도 측정모형의 지표와 동일할 경우 ○, 신규지표일 경우 × 로 표시

<표 3> 경찰 내부청렴역량도 평가모형 측정체계

평가차원	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가 지표(설문항목)	설문항	관위지표 ¹⁾ 비교	비고 ²⁾
내부청렴역량지수 측정모형	제도구축·운영	부패통제제도구축	▪ 부패방지를 위한 행동기준의 구체성	1	○	지표 비교 보조 질문
			▪ 자체감사계획 수립의 구체성	2	×	
		부패통제제도운영	▪ 부패방지를 위한 행동기준의 운영 실효성	3	○	
			▪ 내부고발제도의 운영 실효성	4	○	
			▪ 공정한 직무수행의 확보제도 운영 실효성	5	○	
			▪ 이해관계 직무회피 제도 운영의 실효성	6	○	
			▪ 업무처리 기준·절차 및 처리과정의 정보공개 수준	7	○	
			▪ 개인 및 부서의 평가시 청렴성 반영 정도	8	○	
	조직문화·부패통제역량	조직문화	▪ 조직내 부패행위의 관행화 정도	9	○	
			▪ 조직내 공/사 구분의 명확화 정도	10	○	
			▪ 조직내 부패에 대한 용인정도	11	○	
		부패통제	▪ 부패방지를 위한 윤리강령에 대한 직원들의 내면화 정도	12	○	
			▪ 민원인의 이의 제기에 대한 충실한 처리 정도	13	○	
			▪ 자체 사고 축소·묵살 방지 개선 노력 정도	14	×	
			▪ 부패방지를 위한 기관장 노력도	15	×	
			▪ 조직내 감사체계 운영 효과성	16	○	
	자체감사역량	▪ 기관장의 자체감사 실효성 제고 노력 정도	17	×		
		▪ 감사 결과의 반영 정도	18	×		
	공직자행태·인사투명성	간부·직원청렴도	▪ 간부들의 업무 추진 공정성·투명성 정도	19	○	
			▪ 일반직원들의 업무 추진 공정성·투명성 정도	20	○	
		인사투명성	▪ 승진·전보시 금품·향응 제공 정도 인식	21	△	
			▪ 금품·향응이 인사결과에 미친 영향 정도	22	△	
			▪ 승진·전보시 금품향응 제공 경험 정도	23	△	
- 금품·향응 제공시기			23-1	△		
- 금품·향응 제공이유			23-2	△		
- 인사상의 부패방지 개선방안	23-3	△				

※ 주: 1) 국민권익위원회 내부청렴도 측정모형의 지표와 동일할 경우 ○, 신규지표일 경우 ×, 내부 부패지수측정모형 중 인사영역 지표일 경우 △로 표시
 2) 보조질문은 평가점수에서 제외하고 정책적 참고자료로만 활용함.

□ 경찰 청렴도 측정지수(Police Integrity Measurement Index; PIMI) 산정방법

종합청렴도지수(안) = 대민 청렴도지수(50%) + 내부청렴역량지수(50%)

□ 기관별 청렴도 산출방식

- 종합청렴역량도는 대민청렴도 점수와 내부청렴역량도 점수를 각 50%씩 반영 후 산술평균하여 산출

◇ 경찰 청렴역량도 산식 ◇

(1) 종합청렴역량도 = 대민청렴도지수(50%) + 내부청렴역량지수(50%)

(2) 대민청렴도지수 = 체감청렴도×가중치 + 잠재청렴도×가중치

· 체감청렴도 = 부패경험영역 점수×가중치 + 부패인식영역 점수×가중치

· 잠재청렴도 = $\sum(\text{업무환경} \cdot \text{행정제도} \cdot \text{개인태도} \cdot \text{부패통제 점수}) \times \text{영역별 가중치}$

· 하위영역별 청렴도 = $\sum(\text{영역내 항목점수} \times \text{항목별 가중치})$

(3) 내부청렴역량지수 : $\sum \text{평가영역별 점수} \times \text{가중치}$

· (평가영역별 점수 = $\sum \text{설문항목별 점수} \times \text{가중치}$)

※ 설문 항목별, 영역별 가중치는 '08년 6 ~ 7월경 확정, 측정결과 발표시 공개

- 평가항목별 점수산정 방식

- 리커트 7점 척도를 10점으로 환산

- 금품·향응 제공빈도 및 규모항목(비리커트 척도) : 기관별 제공빈도·규모의 분포를 이용하여 점수화

$$\text{금품/향응 제공빈도(규모) 점수} = 10 \times \left(1 - \frac{\text{기관별 응답자 평균제공빈도(규모)}}{\text{UCP}} \right)$$

* UCP는 기관별 제공빈도(규모) 누적감마확률분포의 95%에 해당되는 값

* 기관별 응답자 평균제공빈도(규모) = 총제공빈도(규모)/기관전체응답자

□ 평가지표체계의 가중치 산정방법 및 조사 실시

- 본 조사 전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간 중요도(가중치) 산정을 위한 조사 실시
 - 중요도 산정을 위한 방법은 계층절차분석(AHP)기법 또는 고정총합척도법(CSM)을 이용
 - 조사 대상자는 부패관련 전문가·시민단체 인사 및 일반시민·경찰 내부 인사 등을 대상으로 가중치 조사
- ※ '08년 조사의 가중치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평가지표 가중치를 준용하여 적용하되 '09년부터 자체 중요도 조사를 실시하여 적용할 예정임.(권익위 평가지표만 종합점수에 반영하고 나머지 지표는 시책자료로만 활용할 예정임)

3. 경찰 관서별 청렴도 조사설계

□ 조사대상 분야: 4대 단속허가분야 및 2대 민원발생 다발 분야

- 4대 단속·허가분야: 유해업소 단속, 교통단속(음주·무면허 운전 전자 단속 및 일반법규 위반 단속), 교통사고 조사, 총포·도검·화약류 등 소지허가
- 2대 민원발생 다발 분야: 계약관리, 경비업 허가 및 갱신

□ 측정대상업무 선정기준

- 측정업무 : 경찰의 대민업무 중 우월적 결정이나 처분 등으로 부패발생 소지가 높은 업무를 선정
 - 인·허가, 지도단속, 검사 등 경찰서가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업무 외에 대등한 지위에서 행하는 계약업무도 포함
- 제외업무 : 반복적인 행정절차에 의해 처리되는 단순업무 등
 - 단순 반복적인 행정절차에 의해 처리되는 업무 : 업무상담, 단순 질의회신, 증명서 발급 등
 - 측정대상기관에 대한 이의신청 등 고충민원업무 : 진정민원 등
 - 단순한 요식행위에 의해서 종료되거나, 민원인과의 업무접촉이 발생하지 않는 업무 : 전자공시, 인터넷 민원업무 등
 - 기타 처리건수가 적어 전화조사가 곤란한 업무 등

□ 설문조사방법

(1) 대민 청렴도 조사방식

- 측정대상업무와 관련하여 **경찰관서와 직접 접촉경험이 있는 민원인 등에 대한 전화설문조사** 실시
 - 조사대상자의 익명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예산절약을 위해 “면접조사”를 피하고 “전화조사” 방식을 택함

(2) 내부 청렴역량도 조사방식

- 경찰서 경찰관(경정 이하)을 대상으로 전자메일에 의한 **온라인조사**로 실시
- 설문지를 보안성이 보장되는 고객만족모니터센터의 온라인 DB에 게재하고 대상 직원이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설문응답**

(3) 조사·분석과 진단·해석의 이원화

- 조사담당기관과 조사결과에 대한 분석·해석 담당기관을 이원화하여 조사의 전문성 제고 및 조사결과의 정책 환류 제고
 - **조사담당기관: 고객만족모니터센터**
 - 조사결과에 대한 통계데이터 처리 및 관서별·급지별·업무별 청렴도 지수 산출
 - **조사결과에 대한 분석·해석 담당기관: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 조사결과에 대한 종합적 진단·분석·해석 및 개선방안 등에 대한 처방책 제시


(4) 조사표본 누락방지 및 측정결과 검증

- **제출표본 및 조사결과 검증시스템 구축**
 - 제출표본 누락·조작, 유리한 응답유도 등 표본관리행위에 대한 방지장치를 강구하여 청렴도 측정결과의 신뢰도 제고
- **조사표본 누락 및 표본관리 방지방안**

- 자료제출 기관 및 제출표본 규모를 확대하여 표본관리 가능성 축소
- 제출명부 누락 또는 조작 여부에 대한 현지확인 점검 강화
- 조사표본에 대한 무작위 검증 : 익명성을 최대한 보장하여 유리한 응답행위 여부에 대한 무작위 검증 실시

○ 신뢰도 저해행위 발생시 처리방안

- 조사대상 표본(민원인명부) 누락 또는 조작시
 - 누락표본은 추가조사 후 우선적으로 반영
 - 해당사실을 측정대상기관장에 통보
 - 고의적인 누락 또는 조작시 조사결과 무효화
- 표본관리 행위로 신뢰도에 영향을 미친 경우
 - 대체표본을 통한 재조사 실시
 - 당해표본 최저점 부여 또는 기관 청렴도 집계 제외
 - 측정결과 공개시 해당사실 대외공개
 - 측정기관(또는 감독기관)에 관련자 인사조치 등 요구

 조사대상 관서 선정 기준

- 조사대상 기간 또는 전년도 통계조사 결과, 측정대상업무 전반에 걸쳐 각 지방경찰청별로 민원인들의 이의제기(측정대상기관에 대한 이의신청 등 고충민원) 건수와, 비리 등으로 인한 징계처분 건수가 많은 산하 경찰서를 우선 선정
- 조사대상 기간 동안 경찰관 비위징계 건수 다발 관서 우선 선정
- 조사대상 기간 동안 경찰관 범죄 및 비리행위자 다수 발생 관서 우선 선정
- 조사대상 기간 동안 경찰청 정기종합사무감사 및 특별감찰활동에서 지적 다발 관서
- 조사대상 기간 동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규정한 부패행위자 발생 관서 및 경찰공무원행동강령을 위반한 경찰관서

-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위의 기준이 동일할 경우 비위징계 건수 및 부패행위자 상위 발생 관서 우선 선정
- ※ 16개 지방청에서는 위와 관련된 자료를 2008. ○. ○ 까지 본청 감사관실 검찰 담당관에게 제출

□ 표본구성 및 할당방법: 16개 지방청별급지별 조사대상 관서 선정

- 표본구성 및 할당 방법: 평가대상 관서별 임의할당표본추출(Quota Sampling)
 - 측정업무 수행기관의 특성을 감안하여 일정기준에 따라 분류 후 무작위 계통추출
 - 업무수행기관을 지방경찰청별, 경찰서 등급별(1:2:3급지)로 분류하고 표본할당에 기초한 무작위 표본추출
 - ※ 조사표본규모가 20~30개 이상이면 정규분포를 따른다는 통계학의 이론(중심극한 정리)을 적용하되, 조사결과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업무별 조사표본이 50표본 이상 되도록 측정업무를 최대 10개 이내로 제한
- 자료제출 기관별로 업무 처리량이 많은 경우 계절성을 감안하여 분기별·월별 추출(홀수월/짝수월, 홀수분기/짝수분기 등)
 - ※ 응답거절률과 표본관리행위 방지 등을 고려하여 측정업무별로 조사표본의 3배 이상의 명부가 확보되도록 자료제출 기관별로 제출 표

본규모 할당

□ 표본규모: 16개 지방청별 약 25% 경찰서(지방청별 비례 할당에 따라 편차)

□ 조사대상기관 표본 선정의 원칙

- 2차년도 조사부터는 전년도 조사기관을 제외한 각 지방청별 경찰서를 대상으로 우선 표본추출
- 매년 각 지방청별 소속 경찰서의 약 25%를 조사함으로써 전 경찰서를 4년 주기로 1회 정도 조사

□ 대민청렴도 조사 개요

- 대상기관 : 전국 239개 경찰서
- 총 조사표본 규모 : 총 3,000표본
 - 16개 지방청별 소속 경찰서의 약 25%를 조사대상 관서로 표본추출
 - 각 경찰서별 6개 조사업무별로 표본을 체계적 비례할당하여 1개 경찰서당 50표본 내외를 유효표본으로 조사

- 기관별 조사표본 : 50표본 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대민업무 규모가 적은 기관은 일부 조정
 - 경찰서 등급을 기준으로 1급지(관서당 50표본), 2급지(관서당 40표본), 3급지(관서당 30표본)별로 유효표본수를 차등 적용하여 계산

- 측정업무별 조사표본 : 10표본 이상 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대민업무 처리건수 및 통계적 신뢰성 등을 고려하여 업무별 조사표본 규모를 할당 (단, 처리건수가 적은 경우 전수조사)

- ※ 전국 239개 경찰서 전수조사를 할 경우, 등급을 기준으로 1급지는 각 100부, 2급지 각 80부, 3급지 각 60부의 표본규모를 할당할 때 총 10,110부의 표본 규모임

<표 4> 측정대상기관 현황 및 표본 할당 규모

구분 지방경찰청	지방청별 소속 경찰서	경찰서 등급(할당 표본수)			조사대상 경찰서 표본규모 ¹⁾	지방청별 표본규모 ²⁾
		1급지(50)	2급지(40)	3급지(30)		
서울	31	31			8	400
부산	14	14			4	200
대구	9	8	1		2	100
인천	9	7	1	1	2	100
울산	4	4			1	50
광주	5	5			1	50
대전	5	5			1	50
경기도	35	25	5	5	9	450
강원도	17	3	4	10	4	200
충청북도	11	2	2	7	3	150
충청남도	14	4	4	6	4	200
전라북도	15	4	4	7	4	200
전라남도	21	4	4	13	5	250
경상북도	24	5	6	13	6	300
경상남도	22	6	6	10	5	250
제주도	3	2	1		1	50
합계	239	128	37	74	60	약 3,000

※ 주 1) 각 지방청별 소속 경찰서의 약 25%를 조사대상 관서로 표본추출
 2) 각 경찰서별 6개 조사업무별로 표본을 체계적 비례 할당하여
 1개 경찰서당 50표본 내외를 유효표본으로 조사

□ 표본추출방법:

- 비례층화표본추출방법: 지방청별·급지별 표본 선정
- 무작위표본추출방법: 관서별·민원분야별 설문응답자 선정
- 할당표본추출방법: 관서별·민원분야별 설문응답자 선정

□ 설문응답자 선정 기준

- 평가대상 치안서비스 기능분야별 지난 한 해(2007. 7. 1~2008. 6. 30) 동안 경찰관서에 민원처리 경험이 있는 전체 민원인 명부
 - ※ 민원인 명부 제출 양식 참조
- 조사대상 민원인 명부 제출 기한: 2008. ○. ○. 18:00까지
- 민원인 명부 제출처: 본청 감사관실 감찰담당관

4. 경찰 관서별 내부청렴도 조사설계

1) 측정 대상기관

- 대민 청렴도 측정대상기관과 동일한 기관(경찰관서)을 대상으로 측정

2) 내부 청렴역량지수 산출방식

- **청렴역량지수 산출 방법** : \sum 영역별 점수 \times 가중치
 (영역별 점수 = \sum 설문항목별 점수 \times 가중치)
 ※ 설문 항목별, 영역별 가중치는 '08. 7월 경 확정, 측정결과 발표시 공개

3) 조사표본규모 및 표본추출

- (1) 조사표본 규모

- 관서별 100 표본을 기준(80~120표본)으로 하되, 표본수가 부족한 기관(3급지)의 경우 해당 기관의 가능 표본수만으로 실시
- ※ 기관별표본수는 통계적 신뢰성 및 유의수준 등을 고려하여 할당

<표 5> 내부청렴역량도 급지별 표본 할당 규모

구분 급지	급지별 기능 수	할당 표본수	업무분야별 표본 할당
1급지	9개 내외	100명 이상	업무당 10명 이상
2급지	6개 내외	50명 이상	업무당 10명 내외
3급지	4~5개 내외	30명 이상	업무당 5명 내외

- ※ 주 1) 각 지방청별 소속 경찰서의 약 25%를 조사대상 관서로 표본추출
- 2) 각 경찰서별 6개 조사업무별로 표본을 체계적 비례할당하여 1개 경찰서당 100표본 내외를 유효표본으로 조사

- 표본구성 및 할당 방법
 - 측정업무 수행기관의 급지별 특성(기능 수)을 감안하여 업무분야(기능)별로 일정 기준에 따라 분류 후 무작위 계통추출
 - 경찰서 등급별(1·2·3급지)로 업무분야를 분류하고 표본할당에 기초한 무작위 표본추출
- 표본규모: 조사대상 60개 경찰관서를 모두 1급지로 할 경우 약 6,000 표본 내외

(2) 직원명단 제출 범위

- 기관별 직원명단 범위 : 경정 이하 전 직원의 명단 제출

(3) 표본추출 방식 및 기준

○ 표본추출 방식

- 표본오차 최소화를 위해 측정대상기관에서 제출한 명부에 대하여 DB 구축 후 무작위 표본추출

○ 표본추출 대상기간 : 전년도 7. 1 ~ 당해년도 6. 30

- 계절별 민원성격 및 업무내용의 차이를 반영하기 위해 최근 1년간(12개월)을 표본추출 대상기간으로 설정
- 이는 권익위의 조사대상기간(전년도 8. 1~당해년도 6. 30)보다 앞서 경찰청 자체적인 조사가 선행됨으로써 사전 내부점검과 평가 및 권익위 평가에 대비하기 위함임.

○ 측정 대상기준 : 2008. 6. 30 현재

- ※ 근무경력 1년 이하인 직원, 기능직과 비정규직직원(일용직 등)은 제외

○ 표본추출 방식

- 직원리스트를 **경찰서별, 직급별로 층화**하고 직급별 비율에 따라 직급별 측정표본을 비례할당
- ※ 표본선정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조사담당기관(고객만족모니터센터)에서 명부에 대한 DB를 구축하고 기관별·직급별로 할당된 표본수 추출
- ※ 직급구분은 「공무원평정규정」, 「공무원보수업무등처리지침」에 의거한 상당계급을 기준으로 분류

조사기간: 2008. ○. ○~○. ○(2주간)

설문조사방법:

- 민원인 명부에 기초하여 컴퓨터를 활용한 전화조사시스템(CATS)

설문조사 담당기관:

- 경찰청 경찰혁신기획단 발전전략팀 고객만족모니터센터

5. 조사결과의 분석

○ 조사결과 보고서 기술 순서는 다음 사항을 담고 있어야 함.

(1) 조사의 개요

- 조사목적, 조사설계
- 표본특성
 - 지방청별 분포, 급지별 분포, 민원업무분야별 분포, 계급별 분포, 연령대별 분포
- 청렴도 측정모델
- 측정 항목
- 청렴도지수 측정산식: 대민청렴도지수, 내부청렴역량지수, 종합청렴도지수 산출식
 - 평가차원별(대민청렴도지수, 내부청렴역량지수) 청렴도지수 산출 후 종합청렴도지수 산출
 - 지방청별, 급지별, 관서별, 민원업무분야별 청렴지수 산출
 - 평가영역별, 평가항목별, 세부평가지표(설문항목)별 청렴도 지수 산출
- 척도 환산방법 : 7점 척도의 10점 만점 점수 환산방법
- 금품제공 빈도 및 규모 점수화 공식

(2) 조사의 인구통계학적 분석

(3) 조사결과의 요약

- 지방청별·관서별·급지별·민원업무분야별 대민청렴지수 조사결과 요약
- 지방청별·관서별·급지별·민원업무분야별 내부청렴역량지수 조사결과 요약
- 지방청별·관서별·급지별·민원업무분야별 종합청렴역량지수 조사결과 요약

(6) 종합청렴역량도 지수 분석

- 대민청렴도지수 평가차원의 분석 종합
 - 지방청별·관서별·급지별·민원업무분야별 대민청렴지수 분석

- 민원업무분야별로 대민청렴지수 분석:지방청별·관서별·급지별 분석
- 내부청렴역량지수 평가차원의 분석 종합
 - 지방청별·관서별·급지별·평가영역별 내부청렴역량지수 분석
- 종합청렴역량지수 분석 종합

(5) 대민청렴도지수 분석

- 지방청별·관서별·급지별 대민청렴지수 분석
- 민원업무분야별 대민청렴지수 분석
- 평가영역별(체감청렴도, 잠재청렴도) 청렴지수 분석
- 평가항목별 청렴지수 분석
 - 체감청렴도 영역의 개인적 경험·인식 청렴지수 분석
 - 잠재청렴도 영역의 행정제도, 부패통제, 업무환경, 업무태도 청렴지수 분석

(6) 내부청렴역량지수 분석

- 지방청별·관서별·급지별 내부청렴역량지수 분석
- 평가영역별 청렴지수 분석
 - 부패통제제도 구축
 - 조직문화·부패통제역량
 - 공직자 행태·인사투명성
- 평가항목별 청렴지수 분석
 - 부패통제제도 구축 영역의 부패통제제도 구축, 운영 항목
 - 조직문화·부패통제역량 영역의 조직문화, 부패통제, 자체감사역량 항목
 - 공직자 행태·인사투명성 영역의 간부·직원 청렴도, 인사투명성 항목

(7) 개방형 질문 응답 결과 요약 정리

(8) 종합 진단 및 정책적 함의·개선방안

6. 조사결과의 정책적 활용 방안

□ 평가결과의 인사고과 반영

- 평가결과는 관서장 인사고과(치안종합성과평가)에 일정비율 반드시 반영

□ 조사결과 발표방법:

- 지방청별·경찰서별 점수와 순위 공개를 원칙

1) 조사결과의 활용방법

- 경찰관서 청렴도 측정 결과, 산출된 정보를 환류하여 기관장 인사 및 성과급 차등화 자료로 활용
- 조사결과는 해당 경찰관서의 부패정도 및 치안정책 자료로 적극 활용
- 청렴도 순위가 높은 지방청과 경찰서(평가대상 관서 중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시상·포상하고 재정적 인센티브 제공
 - 차기 연도 자체청렴도 평가 면제 및 청렴인증경찰서 지정
 - 정기 일반감사 1년 유예 및 기관표창 상신
 - 개인 우수 유공자는 표창 대상자로 우선 선발
 - 조사결과는 각 기관별 시간외 수당 등에 대한 예산을 차등 배분
- 청렴도 측정 결과, 청렴지수가 낮은 업무분야 및 경찰서에 대한 조치 방안
 - 평가결과 각 년도 하위 20% 경찰관서에 대해서는 기관주의(2회

- 연속 선정시 기관경고) 및 소속 상급기관(지방청) 감사관실에 자체 청렴도 향상대책과 이를 반영한 감사계획을 의무적으로 작성·보고하고 특별감찰을 지속적으로 추진
- 각 지방청 감사관실은 주기적으로 소속 경찰서의 이행정도 및 개선정도를 점검·평가하고, 본청 감사관실에 경과조치사항 및 성과를 분기별로 보고
 - 본청 감사관실은 경찰청장께 특별 보고(지휘관 회의시 수시 지시·독려)
- 조사결과를 기관장(경찰서장) 인사고과(치안종합성과평가)에 일정비율 반영-2차년도 이후
- 치안종합성과평가 반영 의무화 및 반영비율 합리적 조정 필요
 - ※ 한국철도공사의 경우 자체청렴도 평가 점수를 내부경영평가에 8% 반영하고, 간부급 청렴도 평가 결과 연봉 10% 반영하고 있음.
- 당해 연도 미평가 경찰서 기관장에 대한 치안종합성과평가 반영 방안
- 매년 각 지방청 소속 경찰서 중 약 25%만 평가대상 관서로 선정되므로 평가제외 기관장에 대한 인사고과 반영의 합리적 방안 도출 필요
 - 따라서 평가제외 경찰서의 경우, 16개 지방청별로 평가대상 경찰서의 종합평균점수를 환산하여 치안종합성과평가에 반영
 - ※예컨대 A지방청 소속의 조사대상 경찰서가 5개일 경우, 각 그룹 내 지방청별상대적 순위와 평가대상 경찰관서의 평균점수를 환산한 점수를 치안종합성과평가에 반영
- 구조적 취약분야 집중 제도 개선
- 각 기관(경찰관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낮은 부패취약 업무분야에 대하여는 집중적인 컨설팅 및 제도개선 지원을 본청 차원에서 조치

○ 비리행위자 및 청렴도 훼손자 퇴출제 도입

- 국민신뢰를 저해하는 비리행위를 저지른 부적격 인사 및 청렴도 훼손행위자 발생시,
- 인사기록관리시스템을 활용한 경력을 추적·관리하여 향후 모든 근무지에서 민원업무 보직 부여 배제
- 타 관서 전보시에도 유사민원업무(교통사고조사, 경비업 허가갱신 등) 부여 금지
- 내근업무 퇴출, 근무평정, 성과급 미지급 등 불이익 조치

2) 조사 결과 시상·포상 방법

- 각 지방청별 소속 경찰관서 수의 차이로 인해 조사결과에 대한 피평가 기관의 불만을 최소화하고, 표창·시상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소속 경찰서 수를 기준으로 3개 그룹으로 구분하여 그룹 내 기관별 순위에 따른 청렴도 우수기관 선정·발표

<표 6> 소속 경찰서 규모별 조사결과 시상·포상의 유형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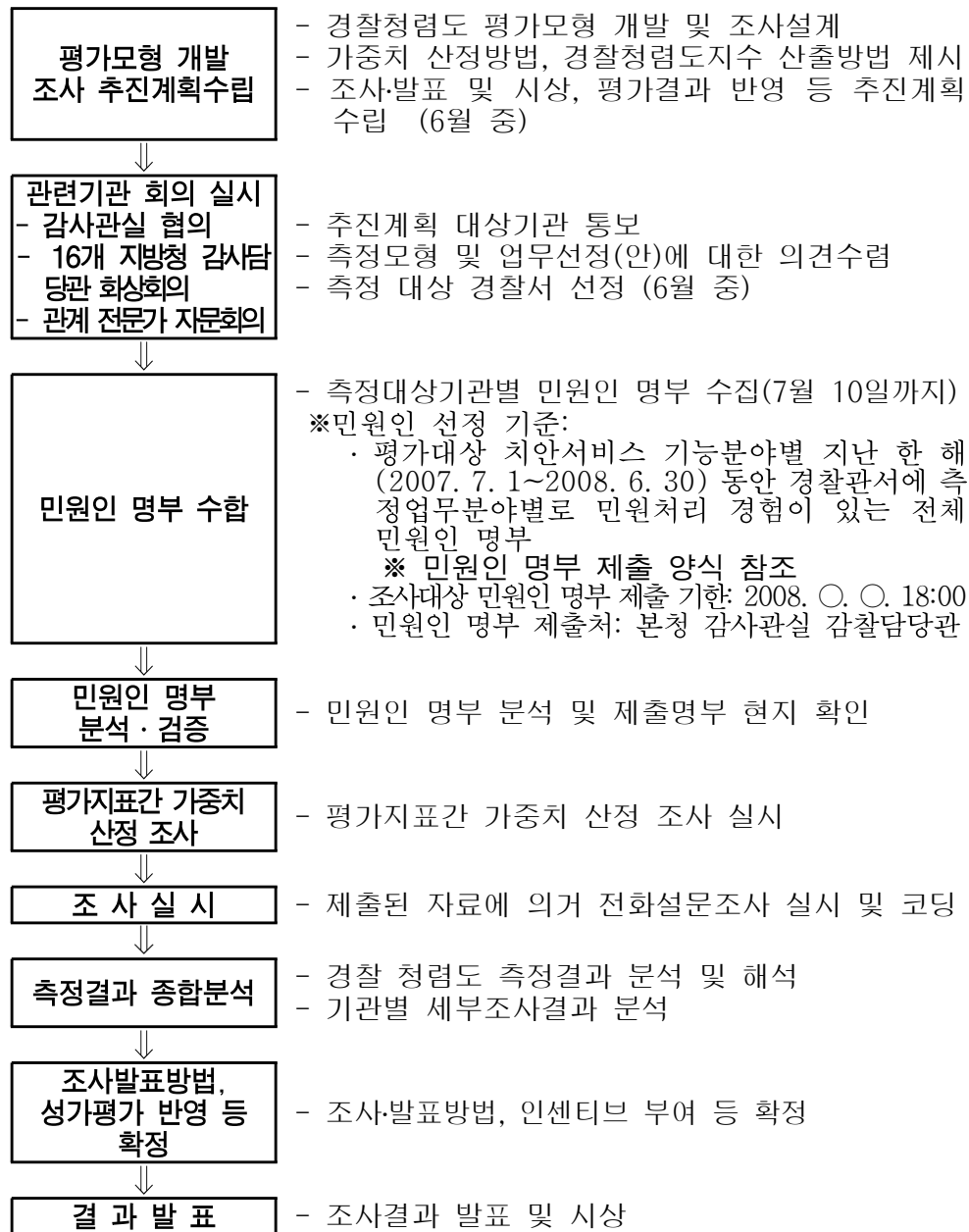
유형	지방청별 경찰관서 수 분포	지방청 수	대상 지방청
A군(群)	21개 이상	5	서울, 경기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B군(群)	11 ~ 20개	5	부산,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C군(群)	10개 미만	6	대구, 인천, 울산, 광주, 대전, 제주도

7. 조사결과의 발표 방법

최적 대안

- 종합순위와 분야별 조사결과 모두 상·중·하위권 3개 그룹으로 구분하여 그룹별로 발표(※ 상위권 25%, 중위권 45%, 하위권 30%로 할당)
 - 종합순위 상위 6개 경찰서는 순위 발표(최우수1, 우수2, 장려3)
- 최종 발표방법의 선정기준은 평가의 목적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지속적인 자체 청렴확보 대책을 수립·집행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사전예방적 부패통제메커니즘’이 작동할 수 있도록 고안
- 따라서 이를 위해 기관별 종합순위는 상위 기관(25%)만 발표하고, 나머지는 중·하 그룹별로 구분하여 청렴지수와 2차년도 이후 전년 대비 개선도를 발표
- 분야별로 상중하 그룹별로 발표함으로써 경찰서간 위화감 완화

II 설문조사 추진일정



Ⅲ 연구추진 일정

연구期間(2008. 5. 부터 2008. 10. 30.까지)

課業期間(週別) 課業內容	推 進 日 程							備考
	2008 년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 평가모형 개발 및 조사설계 등 청렴도 조사 추진계획 수립	■							사전 준비
• 조사계획 수립 및 유효 표본규 모 등 조사설계 확정	■							평가 모형 개발 및 조사 설계
• 관련기관 회의 - 추진계획 대상기관 통보 - 측정모형 및 조사계획(안)에 대한 의견수렴		■						
• 의견수렴 결과 반영 - 16개 지방청 감사담당관 화 상회의 실시 - 전문가(정책자문단) 세미나		■						설문 조사 준비 및 수행 &
• 각 지방청별 측정 대상 경찰서 선정		■	■					
• 민원인 명부 수합 및 분석·검증			■					보고서 작성
• 평가지표간 가중치 산정 조사			■	■				
• 설문조사 준비 및 실시 - 조사원 모집·교육 - 전화설문조사 실시				■				
• 설문지 코딩 및 통계처리				■	■			
• 측정 결과 종합분석					■			공정률
• 설문조사 결과 해석 및 보고서 작성						■	■	
• 조사결과 발표 및 시상								100%
• 작업 공정율(%)	10	20	20	20	20	5	5	
• 누적 공정율(%)	10	30	50	70	90	95	100	



치안정책연구소
POLICE SCIENCE INSTITUTE

2008년 책임연구과제

2008년 책임연구과제

경찰 관서별 청렴도 평가모형 개발 및 조사설계



2008. 10.



치안정책연구소
Police Science Institute

이 상 수 선임연구관(정책기획연구실)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최근 민중의 지팡이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재산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할 경찰관에 의한 범죄행위가 연이어지면서 경찰에 대한 국민적 비판과 불신이 비등하고 있다. 이명박정부 출범이후 ‘섬기는 정부’라는 국정목표를 경찰청 차원에서 실현하기 위해 ‘경찰이 새롭게 바뀌겠습니다’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조직·인사관리 전반에 걸쳐 강도 높은 변화를 추진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최근 5년간 기소유예 이상 경찰관 범죄 유죄비율은 전반적인 감소추세에 있으나, 경찰관에 의한 부녀자 납치 강간·총기사고·노래방 방화·성폭행 등 사회적 비난이 높은 범죄는 근절되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표 1-1> 최근 5년간 경찰관 범죄 현황

연도 유형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형법범 입건	354	443	623	624	645
기소유예 이상	166	185	181	122	137
기소율 (기소유예포함)	46.9%	41.8%	29.1%	19.6%	21.2%

경찰관에 의해 발생한 일련의 불미스러운 사건은 경찰의 개혁노력을 무색하게 하고 전체다수 경찰관들의 변화열정과 근무의욕을 저하시키는 요소로도 작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찰관 범죄로 국민이 오히려 경찰 조직을 불안하게 생각하여 국가공권력의 상징인 경찰의 법집행력 약화를

초래하는 부정적 결과를 양산하고 있다.

이 같은 경찰비리의 발생원인은 경찰업무의 상당부분이 사건현장에서 경찰관리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찰업무 특성상 외부 유혹이 상존하고, 개인의 도덕성이나 사명감 결여로 돌발성 자체사고가 빈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그간 채용에서 퇴직시까지 체계적 검증과 관리가 미흡하여 자질이 의심되는 자의 경찰임용·재직으로 경찰비위 예방에 한계가 있었음도 사실이다. 나아가 폐쇄적인 수사경과제 운영으로 부적격자 퇴출이 곤란하였고, 금품비위 등 유착비리가 일부 잔존해 있는 것도 경찰비리가 끊이지 않고 발생한 원인이라 할 수 있다.

이에 경찰청에서는 이들 문제유발 경찰들을 구속하고 감독자를 직위해제 하는 등 즉각적이고 엄정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전국 경찰지휘관·총경급 워크숍 개최를 통해 선진일류경찰 실현을 위한 비전을 공유하고, ‘국민을 섬기는, 새롭게 달라진 경찰상’ 확립을 위해 현안과제를 선정,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범질서 확립, 민생치안 강화, 국민편익을 위한 수사체제 확립 등 선진일류 국가 실현을 위한 치안분야 추진전략 도출과 실천을 이행하고 있다. 특히 사건현장에 신속출동하여 민생문제 해결을 하기 위한 현장즉응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이 일환으로 ‘현장 속으로, 국민 곁으로’ 다가가기 위해 <표 1-2>에 보는 바와 같이 ‘민생치안 강화방안’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사건을 축소·목살하는 경찰관은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형사입건토록 의무화하고, 상급자의 축소 압력을 막기 위한 내부고발제 실시 및 사건 축소자 적발시 감독자 연대 문책, 그리고 부적격 경찰관에 대한 퇴출 강화, 신규채용 후보자에 대한 면접 강화 및 공직윤리·인성교육 강화, 징계 처분자의 타 경찰서·지방청 즉시 진출 등 비교적 강력한 내용을 담고 있다.

<표 1-2> 경찰의 민생치안 강화방안

경찰청의 민생치안 강화방안

기존	과제	개선
·범죄 발생 비율로 경찰서·지구대 평가 ·사건 은폐 관행 퍼져 ·상급자 은폐 지시 때 거부 어려워	사건 축소·묵살관행 근절	·사건 축소 보고한 경찰관 직무유기 혐의로 형사 입건 ·은폐 지시 상급자에 대한 '내부 고발제' 도입 ·성과 평가 때 범죄발생률 평가 비중 축소
·비위·폭행 등 경찰관 범죄 잇따라 ·정신질환·범죄 연루지도 채용 때 발견 어려워 ·징계 받아도 대부분 근무지에서 계속 근무	부적격 경찰관 퇴출제 도입	·전문 상담심리사 고용, 면접 검사 ·교육 중 부적격자 발견하면 즉시 퇴교 ·징계 경력 추적 관리해 부적되면 직권 면직 ·징계처분 받으면 다른 경찰서·지방청으로 무조건 전출
·파출소 폐지로 신고 대응이나 순찰 활동 어려워져 ·3부제(일부 4조 2교대) 실시로 근무 인력 부족	일선 지구대 강화	·관할 넓은 농어촌에 파출소 부활(100여 곳) ·탄력 근무제로 취약시간대(오후 10시~오전 3시) 근무 인원 늘려
·강력 사건 잇따른 경기도 지역, 주민 1인당 경찰관은 전국 최저 ·지구대·수사·교통 등 민생 치안 인력 부족	현장 인력 강화	·과·계 통합으로 총 2214명 지구대·수사·교통 부서로 재배치(경기도 우선 배치) ·정보·보안경찰 210명, 민생 부서로 전환(학원연락소 폐지)
·운전면허 시험 문항(50개) 많고 실생활과 동떨어져 ·비현실적인 규제로 사실상 단속 어려워	규제 폐지·완화	·면허 시험 문항 축소(50문항→30~40문항) ·면허증 미소지자 처벌 규정 삭제 ·지체 장애인 면허 취득, 자동차 토탈(선택) 규제도 완화

출처: 중앙일보 2008. 4. 22자 보도

이에 경찰청은 ‘경찰관비위 근절 및 기강확립 대책’의 기본방침을 다음과 같이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첫째, 사정역량 강화를 통한 비위 행위자·감독자에 대한 즉각적이고 엄정한 조치 등 신상필벌로 조직분위기 쇄신을 도모하고 있다.

둘째, 채용단계부터 인력관리 및 감찰시스템 마련, 「썩은 사과(rotten apple) 이론」에 따라 부적격자의 과감한 퇴출·자기혁신을 유도한다는 방

침이다.

셋째 근원적이면서도 유기적인 기능별 기강확립 시스템을 마련하여 건강하고 안정적인 조직분위기 정착에 총력 집중하고 있다.

넷째 자체 자정교육 강화 및 청렴문화운동 활성화로 반부패 기본체력을 배양하는 데 기본방향을 두고 있다.

결국, 경찰 변화와 혁신의 궁극적 방향은 경찰관범죄 근절을 넘어 경찰 신뢰행정 구현이 최우선 과제라 할 수 있다. 즉, 경찰조직과 치안행정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 제고를 통해 경찰의 기관 신뢰적자(trust deficit)를 최소화함으로써 경찰의 국민적 신뢰향상을 위한 다각적인 치안역량 강화방안 수립과 실천으로 구체화되어야 한다.

요컨대, 경찰은 대국민 신뢰회복을 위하여 구조적 경찰부패의 제거와 위법·탈법·편법행위, 그리고 민중의 지팡이이자 정의사회 구현의 선봉에 서야할 경찰 본연의 자세를 망각한 도덕적 해이 현상을 일소해야 할 시대적 소명을 부여받고 있다. 예를 들어 최근 일선 경찰관에 의해 자행된 강도·폭력·강간 사건은 경찰의 대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행위이다. 이에 따라 경찰 자긍심 고취와 경찰 범집행의 엄정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일대 혁신이 강력하게 요청되고 있다.

따라서 경찰 신뢰회복을 위해서는 관련 전략수립과 집행을 통해 경찰 행정의 투명성·책임성·공정성을 확보하는 등 신뢰행정 구현을 통하여 경찰에 대한 불신 해소 및 치안행정에 대한 국민만족도 제고가 무엇보다 절실하다. 이때, 치안행정의 투명성과 책무성 확보방안을 포함한 경찰 감사체계의 효율성 제고 방안이 확고히 실천될 필요가 있다.

특히, 청렴수준 향상에 대한 국민의 공직사회에 대한 기대수준은 과거에 비해 비약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나 공직사회의 청렴성 수준변화는 이에 부응하지 못하여 국민의 기대와 공직사회 청렴도 수준간에 신뢰격차(trust gap)가 좁혀지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경찰청에 대한 국민

적 신뢰도도 이와 연장선상에 있다 하겠다.

요컨대, 경찰조직관리와 운영 전반에 걸쳐 투명성(transparency)과 ‘경찰 책무성(police accountability)’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먼저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직접적으로는 경찰공무원에 의한 부정비리를 최소화하는 것 뿐만 아니라 경찰 법집행 과정의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처리 절차와 기준의 확립, 경찰공무원의 청렴성 확보를 위한 제반 제도수립과 개선 등이 수반되어야 한다. 이때 부패통제는 기존의 타율적 통제에서 자발적·자율적 자정분위기 제고방향으로 전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경찰조직의 관리운영과 인사관리 전반에 걸쳐 책무성 제고를 위해서는 직접적으로는 경찰공무원에 의한 비리행위나 금품·향응 수수 등의 부패를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때 부패통제접근 방식에 있어서도 이제는 사후 처벌적 통제전략에서 사전 예방적 통제전략으로 방향을 바꾸어야 한다. 사전 예방적 부패통제전략은 부패의 ‘가지치기 전략’이 아니라 근본적인 ‘뿌리제거 전략’이다. 즉, 기존의 감사·감찰을 통한 적발·처벌 중심의 사후통제방식에서 시민의 참여와 내·외부 통제를 추진하는 체계적·종합적인 경찰부패 접근방식을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적실성있는 경찰부패 통제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또한 소수가 다수를 감시하는 전략에서 다수가 소수의 잠재적 부패행위자를 감시하는 전략으로 방향을 선회해야 한다. 이를 위해 부패에 대한 엄격한 규제장치를 마련하고 행정정보의 공개를 통한 행정과정의 투명성 확보와, 행정규제의 완화와 규제 법령의 이중성을 배제하고, 근무여건을 개선함으로써 부정부패를 통한 물질적 욕구에 집착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히, 이를 현실화시킬 수 있는 가장 유효한 전략은 경찰 자체청렴도 수준평가를 매년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다.

즉, 경찰 청렴도 수준을 체계적으로 측정·평가하기 위해서는 부패수준을 알기 쉬운 등급 및 숫자정보로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패지

수의 측정이 우선되어야 한다. 즉, 측정(Measurement)이 없으면 이해(Understanding)가 안되고, 이해가 안되면 통제(Control)가 안되고, 통제가 안되면 개선(Improvement)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찰내부의 비리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부패의 수준을 정확히 진단할 수 있는 부패측정지수의 개발과 조사결과를 토대로 부패추이를 시계열적으로 고찰하여 부패의 원인과 문제를 진단함으로써 통제수단과 대응전략으로 환류하는 것이 대단히 필요하다.

또한 객관적인 정보를 토대로 그 기관의 투명성·신뢰성·청렴성을 향상시키는 구체적인 원인분석과, 예방차원의 정책수단과 대안을 강구하고 실천할 수 있게 해 줌으로써 공익증대의 효과를 거양할 수 있다. 아울러 평가대상기관간 부패통제를 위한 자체 정화노력의 경쟁을 유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취약분야의 개혁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공직사회의 청렴성을 제고시킨다는 점에서 그 유용성이 대단히 크다고 할 수 있다.

요컨대, 부패수준에 대한 객관적 측정과 평가는 부패정도를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다. 정량화된 부패지수를 이용한 부패수준 측정을 통해 산출된 평가결과 정보를 환류하여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부패통제 접근이 가능한 것이다. 측정결과는 기존 부패통제 접근의 문제점 개선과 새로운 전략 수립으로 연결시킬 수 있다. 즉, 평가결과를 부패통제 정책 수립과 집행과정에 반영시킴으로써 사전예방적 부패통제 기능도 수행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경찰청에서도 체계적인 부패방지대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부패의 수준과 경찰관서의 투명성 정도를 객관적이고 적실성 있는 평가지표체계로 측정하고, 이 결과를 반부패 제도개선과 점검·평가의 수단으로 적극 연계·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기대효과

위와 같은 인식 아래 본 연구는 지난 2005년에 개발된 경찰 청렴도 평가모형을 새롭게 보완한 새로운 관서별 청렴도 평가모형을 개발하고, 측정을 위한 조사설계를 연구함으로써 치안현장에 즉시 적용가능한 적실성(relevance) 높은 측정모형 개발 및 조사설계를 제시하는 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향후 이 모형을 적용한 정기적인 청렴도 측정을 실시함으로써 일선 경찰관서 지휘관을 비롯한 쏠 경찰관의 부패척결에 대한 관심도를 제고하며, 매년 실시하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조사에도 적극적으로 대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경찰관서 부패수준을 정량화된 척도를 통해 측정하여 지수화함으로써 평가대상기관의 부패지수에 따른 특성을 분석하고, ‘경찰관서별 맞춤형 부패통제정책 수립과 시행’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제공하고자 한다.

나아가 평가결과를 토대로 사전적 예방차원의 부패통제 전략과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경찰비리와 부조리의 개선에 기여하며, 부패방지와 관련한 정책대안을 개발·제시할 수 있는 기틀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기 위한 평가모형을 정립하는 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부패수준 측정의 궁극적인 목적이 부패에 대한 처벌위주의 기존 관행에서 탈피하여 부패예방을 위한 자정노력을 유도하는 데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평가결과 정보가 부패통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환류체계(feedback system)가 원활하게 작동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곧 각 경찰관서의 자체감사시스템과의 연계·운용을 의미하며, 구체적으로 자체감사 계획수립 및 감사역량 제고방안으로 발전되어야 하는 것이

다.

따라서 행정의 수요자인 민원인의 입장에서 해당 경찰서의 청렴도를 측정함으로써 기관별 취약분야를 발굴, 자율적인 제도개선을 유도하고, 전년도와 청렴도 측정결과 나타난 부패취약분야 및 기관별 청렴도를 해당기관에 통보하여 해당 경찰서의 자발적인 반부패 노력을 유발하여 부패통제를 개인차원에서 기관차원으로 전환할 수 있는 것이다.

제3절 연구의 방법 및 내용

경찰관서 청렴도 측정모형 개발을 위한 접근방법은 기존의 공급자(경찰공무원) 중심의 문제해결 접근방법에서 벗어나 민원인이 체감하고 평가하는 고객위주의 수요자 중심에서 부패문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각 경찰관서에서 민원처리 경험이 있는 국민이 중심이 되는 경찰청렴도 모형의 구축과 객관적인 부패관련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치안서비스의 최종수혜자인 국민(민원인)들로 하여금 경찰공무원과 경찰관서의 청렴성을 평가하도록 함으로써 경찰조직 내 부패척결 분위기를 고양시키고, 이를 통하여 국민이 체감하는 청렴성을 향상시켜 투명한 치안행정을 구현하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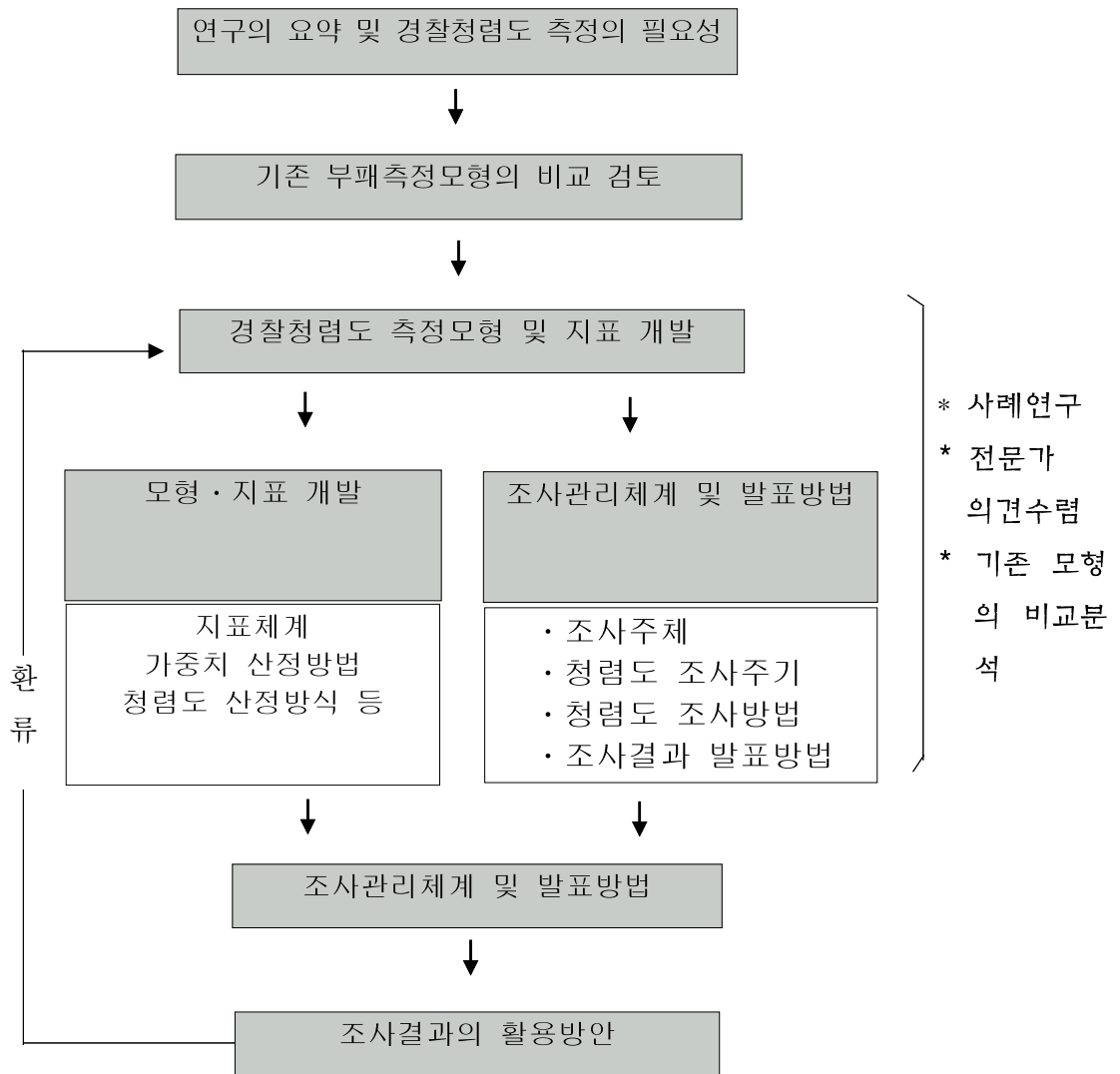
이를 위해 각종 통계자료와 문헌조사를 토대로 적실성 있는 경찰 청렴도 측정 모형과 지표 개발에 참고하였다. 특히 올해부터 청렴시책평가를 통한 종합청렴도 평가체계로 전환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청렴도지수(IPI; Integrity Perception Index)모형의 측정 항목 및 지표에 대하여 비교·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경찰청렴도 측정모형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평가모형 및 평가지표의 개발을 위해 해당분야 전문가집단의

자문회의 개최 및 전문조사기관의 조사전문가, 경찰공무원들간의 브레인 스토밍(brain storming)방법을 이용하여 적실성있는 경찰 청렴도 측정 모형 및 지표체계를 개발하도록 노력을 기울였다.

본 연구의 연구내용은 경찰 관서별 청렴도 평가를 위한 평가체계, 평가방법, 지표의 개발 및 지표간의 가중치 부여방법 등에 관한 모형의 재개발에 초점을 두고, 이 모형에 기초하여 청렴도 측정을 위한 조사설계 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다. 아울러 측정결과의 발표방법과 평가결과 정보의 활용방안에 대하여도 제시하였다.

<그림 1-1> 연구의 진행도



마지막으로 연구기간 및 추진일정은 <그림 1-2>와 같다.

<그림 1-2> 연구추진 일정

研究期間(2008. 5. 부터 2008. 10. 30.까지)

課業期間(週別) 課業內容	推 進 日 程							備考
	2008 년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 평가모형 개발 및 조사설계 등 청렴도 조사 추진계획 수립	■	■						사전 준비
• 조사계획 수립 및 유효 표본규모 등 조사설계 확정	■	■						평가 모형 개발 및 조사 설계
• 관련기관 회의 - 추진계획 대상기관 통보 - 측정모형 및 조사계획(안)에 대한 의견수렴		■						
• 의견수렴 결과 반영 - 16개 지방청 감사담당관 화 상회의 실시 - 전문가(정책자문단) 세미나		■	■					설문 조사 준비 및 수행 &
• 각 지방청별 측정 대상 경찰서 선정			■					
• 민원인 명부 수합 및 분석·검증			■	■				보고 서 작성
• 평가지표간 가중치 산정 조사			■	■				
• 설문조사 준비 및 실시 - 조사원 모집·교육 - 전화설문조사 실시				■	■			공정 률 100%
• 설문지 코딩 및 통계처리				■	■			
• 측정 결과 종합분석					■			
• 설문조사 결과 해석 및 보고서 작성						■	■	
• 조사결과 발표 및 시상							■	
•작업 공정율(%)	10 20	20	20	20	5	5		
•누적 공정율(%)	10 30	50	70	90	95	100		

제2장 경찰 관서별 청렴도 평가모형

제1절 경찰 대민청렴도 측정모형의 개발 및 조사방식

1. 경찰 대민청렴도 측정모형의 개발

1) 경찰 대민청렴도 측정지표의 구성체계

(1) 경찰 대민청렴도 측정모델의 지표체계와 설문문항 구성

청렴도는 추상적인 개념으로서 정의하는 사람들이 중점을 두고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다양하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행정서비스 공급자 또는 공무원 중심의 문제해결 접근 방식에서 탈피하여 국민이 체감하고 평가하는 고객위주의 수요자 중심에서 청렴도를 정의할 필요가 있다. 대체적으로 행정서비스 수요자인 국민이 공무원으로부터 서비스를 받는 과정에서 일반적·보편적인 업무처리 규칙과 기준을 지키지 아니하고 개별적으로 특수한 조건이나 유인에 따라 업무처리 과정이나 결과가 달라지는 것을 부패로 간주, 이를 청렴도가 낮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경찰 청렴도를 우선 국민(민원인)의 입장에서 “경찰 공무원이 부패적 행위를 하지 않고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업무처리한 정도를 평가” 한 것으로 개념정의 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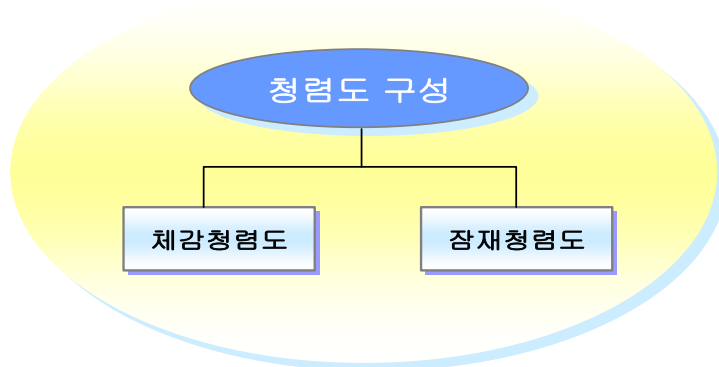
구체적으로 다음 사항과 관련된 행위를 포함한다.

- 경찰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

- 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대가성 여부와 상관없이 경찰관이 그 지위와 권한을 불법부당하게, 또는 편파적으로 사용하는 모든 행위
 - 경찰관의 일방적인 권력·지위 남용이나 잘못된 일처리로 국민의 인권, 재산 또는 신체를 침해하거나 정신·물질적 피해를 입혀 불만이 나 민원제기의 잠재성이 큰 행위

이는 다시 공무원의 부패 행위와 관련된 체감청렴도, 부패를 유발시키는 요인과 관련된 잠재청렴도의 두 가지 측면으로 구체화된다.

<그림 2-1> 경찰 청렴도의 구성



특정 행정기관 또는 업무분야의 “청렴도”는 해당 기관 및 업무분야의 공직자들이 담당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비리 등에 연루되지 않고 법령에 근거하여 얼마나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임하고 있는가를 나타낸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경찰 관서별 기능분야에서 민간인과의 업무처리과정에서 현실적으로 “부패에 얼마나 노출되고 있는가”를 나

타내고자 한다. 한편 부패에 대한 노출정도는 민원인들이 업무처리과정에서 개인적으로 인식하고 있거나 경험하고 있는 부패실태를 반영하는 “체감청렴도”와 부패를 유발하는 요인들의 작용상태를 반영하는 “잠재청렴도”로 구분할 수 있다. 즉, “체감청렴도”는 부패에 대한 개인적인 경험과 인식에 기초한 지수를 의미하며, “잠재청렴도”는 부패를 유발하는 요인들의 상태로써 곧 부패가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을 반영하는 지수를 의미한다. 경찰 대민청렴도 평가지표체계는 <표 2-1>과 같다.

<표 2-1> 경찰 대민청렴도 평가모형 지표체계

평가 차원	평가 영역	평가 항목	평 가 지 표(설문항목)	문 항 번 호	권익위 지표 비교	평가 방식
대민 청렴 도 지수	부패 수준 에 대한 체감 청렴 도	개인적 경험	금품·향응 제공 빈도	문14-1)	○	기관총합 평가형
			금품·향응 제공 규모	문14-2)	○	
		개인적 인식	금품·향응 제공의 효과	문14-3)	×	응답자 개별 평가형
	부패수준 변화		문15)	×		
	부패 유발 요인 에 대한 잠재 청렴 도	행정 제도	업무처리 기준·절차의 복잡성	문 1)	○	
			업무처리 기준·절차 등의 정보공개 정도	문 2)	○	
			업무처리 과정의 명확성	문 3)	×	
			업무처리시 불필요한 요구 정도	문 4)	×	
	부패 통제	불복·이의제기의 용이성	문 5)	○		
		부패신고의 용이성	문 6)	×		
		부패방지 노력도	문 7)	×		
	업무 환경	금품·향응제공 수용도	문 8)	×		
		금품·향응 제공의 관행화 정도	문 9)	○		
		추가 면담의 필요성	문10)	○		
	업무 태도	담당자의 업무처리 공정성	문11)	○		
		담당자의 금품·향응 수수 기대 정도	문12)	○		
업무처리 행태에 대한 민원인 해석 정도		문13)	×			

※ 주: 국민권익위원회 대민·대기관 청렴도 측정모형의 지표와 동일할 경우 ○, 신규지표일 경우 × 로 표시

(2) 체감청렴도 측정지표

“체감청렴도”란 민원인들이 업무처리과정에서 개인적으로 인식하고 있거나 경험하고 있는 부패실태를 나타내며, <표 2-2>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개인적 경험과 인식의 두 가지 항목으로 구성된다.

<표 2-2> 체감청렴도 측정지표의 구성체계 및 내용

평가차원	평가항목	평 가 지 표	지 표 내 용
부패수준 에 대한 체감청렴 도	개인적 경험	금품·향응 제공 빈도	1년간 금품제공 빈도
		금품·향응 제공 규모	1년간 1회 평균 금품 제공액
	개인적 인식	금품·향응 제공의 효과	금품제공이 업무처리에 미치는 효과
		부패수준 변화	과거와 비교한 부정부패 변화 평가

(3) 잠재청렴도 측정지표

- “잠재청렴도”는 부패를 유발하는 요인들의 작용상태, 즉 부패발생 개연성을 나타내며, 업무처리과정에서 경험하거나 인식하고 있는 부패유발요인들의 작용상태를 파악하는 것임

<표 2-3> 잠재청렴도 측정지표의 구성체계 및 내용

평가 차원	평가 항목	평 가 지 표	지 표 내 용
부패유발 요인에 대한 잠재청 렴도	행정 제도	행정절차의 복잡성	관련 처리절차의 복잡성
		정보 공개	행정정보 공개의 적절성
		업무처리과정의 명확성	업무처리 기준과 절차 적용 등 처리과정의 명확성
		행정 규제	불필요한 서류나 조건 요구정도
	부패 통제	불복·이의제기 용이성	부당한 처리나 요구에 대한 이의제기의 용이성
		부패신고의 용이성	부패 신고 및 고발의 용이성 및 여건 정도
		부패방지 노력도	부패방지를 위한 노력정도
	업무 환경	금품제공 수용도	업무처리과정에서의 금품·향응 제공 인식정도
		금품·향응 제공의 관행화 정도	금품·향응 제공의 관행화 정도
		추가 면담의 필요성	담당공무원과의 직접 대면 필요성
	업무 태도	업무처리의 공정성	업무처리 과정의 공정성 정도
		금품·향응 수수 기대	담당자의 업무처리과정에서 금품제공 기대 정도
		업무처리 행태에 대한 민원인 해석	업무처리 과정의 신속성 정도에 대한 응답자의 해석

“잠재청렴지수”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표 2-3>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경찰업무와 관련된 업무환경, 행정제도, 업무태도, 그리고 부패통제의 네 가지 평가항목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다.

(4) 평가지표의 조작적 정의

□ 부패발생 수준 및 실태에 대한 체감청렴도 차원

○ 개인적 경험 평가항목

개인적인 경험에 입각하여 특정기관 또는 기능분야의 부패정도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응답자가 지난 특정 기간동안 실질적으로 “금품 등을 제공 빈도, 제공된 금품의 규모, 금품제공의 대상자” 등이 파악되어야 할 것이다.

① **금품·향응 제공 빈도** : 지난 1년간 금품이나 접대의 제공여부 및 빈도

이는 해당기관과 업무관계에 있는 민간인이 제한된 기간내 업무처리 과정에서 금품이나 접대를 제공한 경험이 있는지, 즉 부패발생 여부와 함께 몇 번이나 금품을 제공하였는가 하는 부패경험의 실질적인 빈도를 통해 부패정도를 반영하고자 한다.

② **금품·향응 제공 규모** : 금품제공 또는 접대시 1회 평균 소요액수

부정부패의 정도 내지는 실태는 공직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빈도, 즉 비리행위의 발생건수 못지 않게 공직자에게 지급되는 금품규모에 영향을 받는다. 부패규모에 대한 파악은 금품제공자로서의 민간인들이 금품제공시 연간 총 소요액을 통해 반영될 수 있다.

○ 개인적 인식 평가항목

현실적인 부패수준이나 정도를 개인적인 인식에 기초하여 규명하기

위해서는 해당기관이나 기능분야에 있어서의 “금품제공이 업무처리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인식”과 “지난해와 비교한 부패수준 변화”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다.

① **금품·향응 제공의 효과**: 금품·향응 제공이 업무처리에 미치는 효과 경찰업무관련 민원인 또는 이해당사자가 금품·향응을 제공하였다면, 그러한 행위가 업무처리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되는지의 여부를 평가하고자 하는 지표이다. 이는 금품·향응 제공이 업무처리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민원인들의 인식을 통해 부패수준에 대한 체감인식 정도를 가늠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② **부패수준 변화**: 지난 1년 전과 비교하여 전반적 부패수준의 변화 평가 과거(1년 전)와 비교하여 관련 업무상의 부패정도가 완화되었다고 생각되는지 더 심화되었다고 생각되는지의 여부를 평가하고자 하는 것으로, 해당 기관이나 업무분야에서 현재 발생하고 있는 부정부패 정도를 1년전 수준과 비교하여 부패수준의 추세 즉 변화정도를 통해 부패실태를 가늠하고자 하는 것이다.

□ 부패유발 요인에 대한 잠재청렴도 차원

○ 행정제도 평가항목

업무처리 관계를 규정하고 있는 제도들이 부패를 유발할 수 있는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측면들이 규명되어야 할 것이다.

업무처리과정에서 적용되는 관련 기준과 진행절차가 중복되거나 번잡하지 않은지, 이와 관련된 정보가 적절히 공개되고 있는지, 업무처리과정의 비교적 누구나 쉽게 이해 가능하고 명확한 과정인지, 불필요한 서

류나 조건을 요구하지는 않은지 등이다.

① 행정절차의 복잡성

민원행정업무 집행과정에서 관련 법규정 체계 또는 기준과 절차가 중복되거나 복잡할 경우 이를 준수하기가 힘들게 되어 관행적인 부패의 주요요인이 될 수 있다. 즉, “민원처리를 위한 기준과 절차가 지키기에 적절했는가?” 하는 것은 공무원의 부패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왜냐하면 기준과 절차가 지키기 어려울수록 편법과 부정한 방법을 동원할 가능성이 커지고 따라서 자연적으로 공무원의 부패개연성이 높아질 것이 때문이다. 따라서 이는 민원업무를 처리할 때 적용하는 기준과 절차가 전체적으로 복잡하다고 생각하는지의 여부를 파악하고자 하는 지표이다.

② 정보공개 : 행정정보 공개의 적절성

업무 처리기준과 진행절차에 대하여 공개되는 정보의 내용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지의 여부 및 업무 처리과정의 진행상황에 대한 정보가 민원인에게 적절히 공개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여부를 파악하고자 하는 지표이다.

③ 업무처리과정의 명확성

이는 업무처리과정에서 적용했던 업무처리 기준과 진행절차 등의 업무처리과정이 비교적 누구나 쉽게 이해 가능하고 명확한 과정인지의 여부를 파악하고자 하는 지표이다.

④ 행정규제 : 불필요한 서류나 조건 요구정도

업무처리의 근거와 기준이 되고 있는 제도로서의 행정규제 등이 규정하고 있는 기준과 요건이 현실적으로 준수되기 어려운 경우 이는 결국 불법자를 양산하여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측면에서 부패발생 가능성을 심

화시킨다. 규제의 대상으로서의 시민들은 자신의 불법행위를 무마하기 위해 금품 등에라도 의존해야 하는 실정이며, 처분자로서의 공직자들은 민간인들에 대해 임의적으로 불법성을 제기함으로써 금품 등을 유도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경찰업무 집행과정에서 행정규제는 현실적으로 업무처리 과정에서 불필요한 서류나 조건을 요구하는 형태로 나타나므로 이에 대한 부패발생 가능성 정도를 파악하고자 하는 지표이다.

○ 부패통제 평가항목

부정부패의 발생을 유도하거나 지속시키는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는 바로 부패에 대한 통제장치의 효과성이다. 부패행위자에 대한 제재를 통해 잠재적 부패행위 의욕을 제거하거나 억제하고자 하는 통제장치가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이는 잠재적인 부패의욕을 현실화시키거나 현실화된 부패행위를 지속시키는 결과를 야기한다.

부패발생 가능성을 가늠하는 수단으로서의 부패통제장치의 실효성은 크게 부당한 지시나 요구에 대한 대응수단으로써 “불복·이의제기의 용이성”, 부패행위자가 쉽게 적발되도록 하는 장치인 “비리자에 대한 신고나 고발여건”, 그리고 “부패를 없애기 위한 노력정도”를 민원인 입장에서 평가함으로써 부패통제 장치의 실효성을 측정할 수 있다.

이 이외에 “자체감사 활동 등의 효과성”과 “적발된 비리공직자에 대한 처벌의 적절성”을 통해 파악될 수도 있으나 이는 민간인들 입장에서는 정확한 정보를 확보하기가 힘들므로 제외하였다. 이 부분에 대한 평가는 ‘감찰활동 성과 및 내부만족도 측정모델’을 통해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① 불복·이의제기의 용이성 : 부당한 처리나 요구에 대한 대응수단

민간인들은 공직자들이 금품유도를 위해 부당하게 업무를 처분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법을 통해 대응할 수 있다. 하나는 이의제기를 통해 부당한 처분이나 요구를 바로잡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금품등을 통해 매수하는 것이다. 즉 민간인들은 부당한 처분이나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구비되지 않을 경우 금품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측면에서 부당한 처분에 대한 대응수단의 상태는 곧 부패 가능성을 가늠하는 척도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불복·이의제기의 용이성”은 업무처리 과정에 불만이 있을 때 이의를 제기하기가 얼마나 수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지 즉, 부당한 처리나 요구에 대한 대응수단이 얼마나 용이하게 구비되어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하는 지표이다.

② 부패신고의 용이성 : 비리공직자에 대한 신고나 고발 여건

부패는 여타 범죄와 달리 은폐성이 매우 강해 외부에서 적발하기가 매우 어렵다. 즉, 부패는 그에 연루된 당사자만이 알거나, 그나마 이들이 소속된 기관내 상급자나 동료 등 구성원이 비교적 용이하게 인지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따라서 부패행위자에 대한 색출은 금품제공자나 내부 구성원의 신고나 고발이 가장 효과적이며, 신고여건이 조성되는 경우 이는 비리행위의 노출위험을 증가시켜 부패행위를 차단하는 효과를 이룩한다. 따라서 비리공직자에 대한 신고나 고발여건에 대한 인식을 통해 부패발생 가능성을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③ 부패방지 노력도 : 부패방지를 위한 노력 정도

청렴도 측정의 목적은 일차적으로 피평가 기관의 부패정도를 객관화된 수치 정보로 확보하여 관련 대책 수립에 반영하는 것도 있지만, 지속적인 평가를 통해 피평가 기관의 자발적인 반부패 노력과 자체 정화 노력을 유도하기 위한 의도도 크다. 따라서 피평가기관의 부패통제 대책

추진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조사결과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위한 반영을 촉진시키기 위해 지난 1년간 부패방지를 위한 노력정도를 평가하고자 하는 지표다.

○ 업무환경 평가항목

업무처리를 둘러싼 분위기로써 부패를 직·간접적으로 유발할 수 있는 환경으로는 “떡값이나 촌지 등의 명목으로 행해지는 부패행위의 관행화 정도, 업무를 수월하게 처리하기 위해 금품 제공이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여부, 업무처리를 위한 추가적인 면담 필요성” 등이 있다. 이들 지표들을 통해 업무처리를 둘러싼 전반적인 분위기 및 환경 측면이 파악될 수 있다.

① 금품제공 수용도: 업무처리과정에서의 금품·향응 제공 인식정도

금품을 제공받은 공직자들이 업무를 긍정적으로 처분하는 경우 이는 결국 민간인들에게 금품제공이 업무처리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아울러 이러한 인식이 팽배해지면 민간인들은 긍정적인 처분을 담보하기 위해 자연히 금품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아울러 금품에 의존하지 않은 상태에서 업무가 부정적으로 처리되는 경우 민간인들은 그 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하기보다는 오히려 금품제공에 더욱더 집착하게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단속 및 수사 대상 등 경찰과의 관계에 있어 일반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있는 민원인 입장에서 업무처리를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는 금품·향응제공을 하는 것이 업무처리에 수월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금품제공 수용도” 지표는 경찰업무 관련 민원인 및 이해당사자가 업무를 수월하게 처리하기 위해 금품(떡값, 촌지)을 제공할 때,

그러한 행위가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함으로써 피평가 기관 경찰공무원의 부패유발 가능성을 파악하고자 하는 지표이다.

② 금품·향응제공의 관행화 정도

사회적으로나 해당 기관 또는 기능분야에 있어 금품(떡값, 촌지 등)이나 접대 제공의 관행화가 심화될수록 업무처리과정에서 개인적으로 그 관행을 벗어나기 어려워 금품을 수수할 개연성을 높아질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부패가능성을 가늠하기 위해 이러한 부패적 행위의 관행화 정도를 파악한다.

③ 추가면담의 필요성 : 담당 공무원과의 직접 대면 필요성

부패는 상당부분 업무처리의 당사자인 공직자와 민간인의 대면관계, 특히 외부사람들이 개입되지 않는 비밀적인 대면에서 이루어진다. 즉 대면기회가 커질수록 금품수수 등 사적인 관계형성의 기회가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근거에서 업무처리 과정에서의 추가적인 대면 필요성은 부패 가능성을 가늠하는 수단이 된다.

○ 업무태도 평가항목

부패는 궁극적으로 공직자와 민간인 양자간의 행위로서 이루어진다. 즉, 업무처리의 주체인 공직자와 민간인의 개인적 가치관이나 태도 및 행태가 작용하여 현실화되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공직자나 민간인이 지니고 있거나 제시하고 있는 태도나 행태를 통해 부패발생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다.

① 업무처리의 공정성

아무리 외적 환경이나 행정제도 등 업무여건이 미흡하더라도 공직자는 부패에 의존함이 없이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즉 부패는 가장 기저에서 공직자의 개인적 행태에 달린 문제이다. 특히, 민간인에 비친 공직자의 업무수행 태도나 행태는 민간인에 의해 금품지급 여부를 결정하게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경찰공직자의 업무수행 태도와 행태를 통해 부패발생 가능성이 규명될 수 있다.

따라서 “업무처리의 공정성” 지표는 업무처리 과정에서 담당경찰공무원이 재량권을 과다행사하거나 자의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단속이나 처리절차를 공정하게 적용하였는지 여부를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다.

② 금품·향응 수수 기대

부패실태에 대한 인식은 크게 기대수준과 현실상태에 의해 결정된다. 즉, 이들간의 괴리에 의해 부패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개인적인 인식이 제시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업무처리 이전에 조사대상자가 해당 기관의 부패수준에 대해 지니고 있는 기대수준을 규명하여 반영함으로써 조사결과의 타당성을 높이고자 한다.

따라서 “금품·향응 수수 기대” 지표는 담당경찰관이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금품(떡값·촌지 등)이나 향응을 제공받기를 기대했다고 생각하는지 여부를 파악함으로써 인적 측면의 부패발생 가능성을 가늠하고자 하는 것이다.

③ 담당 공무원의 업무처리 행태에 대한 민원인의 해석

업무처리 담당자로서의 공직자는 개인적 특성에 따라 다양한 처리태도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업무처리 대상으로서의 민간인들은 이러한

처리태도에 대한 이해와 해석이 전혀 다를 수 있다. 즉 부패 유발적인 측면에서 볼 때 공직자의 처리태도가 동일하게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니더라도 이를 민간인에 따라서는 금품요구의 암시로 해석할 수도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부패발생 가능성은 민간인들이 담당 공무원의 업무처리 태도에 대해 어떤 인식을 견지하고 있는냐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5) 설문항목별 평가방식

설문항목별 평가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응답자개별평가형”과 “기관총합평가형”이 있다. 지난 1년간 경찰서에서 민원처리경험이 있는 일반국민에 대한 청렴도 수준 측정은 양자를 혼용하도록 한다.

<표 2-4> 경찰 대민청렴도 평가모형 지표체계

평가차원	평가항목	평가지표	문항번호	지표내용	비고	
경찰 대민청렴도 지수모형	부패수준에 대한 체감청렴도	개인적 경험	부패발생 빈도	문14-1)	1년간 금품제공 빈도	기관총합평가
			부패 규모	문14-2)	1년간 1회 평균 금품 제공액	
		개인적 인식	금품제공의 효과	문14-3)	금품제공이 업무처리에 미치는 효과	
			부패수준 변화	문 15)	과거와 비교한 부정부패 변화 평가	
	부패유요인에 대한 잠재청렴도	행정제도	행정절차의 복잡성	문 1)	관련 처리절차의 복잡성	응답자개별평가
			정보 공개	문 2)	행정정보 공개의 적절성	
			업무처리과정의 명확성	문 3)	업무처리 기준과 절차 적용 등 처리과정의 명확성	
			행정 규제	문 4)	불필요한 서류나 조건 요구정도	
		부패통제	불복·이의제기 용이성	문 5)	부당한 처리나 요구에 대한 이의제기의 용이성	
			부패신고의 용이성	문 6)	부패 신고 및 고발의 용이성 및 여건 정도	
			부패방지 노력도	문 7)	부패방지를 위한 노력정도	
		업무환경	금품제공 수용도	문 8)	업무처리과정에서의 금품·향응 제공 인식정도	
			금품·향응 제공의 관행화 정도	문 9)	금품·향응 제공의 관행화 정도	
추가 면담의 필요성			문10)	담당공무원과의 직접 대면 필요성		
업무태도		업무처리의 공정성	문11)	업무처리 과정의 공정성 정도		
		금품·향응 수수 기대	문12)	담당자의 업무처리과정에서 금품제공 기대 정도		
		업무처리 행태에 대한 민원인 해석	문13)	업무처리 과정의 신속성 정도에 대한 응답자의 해석		

○ 응답자개별평가형

- 개별설문에 대해 7점 척도로 응답된 응답내용을 집계해 응답자 개인별 점수를 구하고 이러한 개인별 점수를 전체로 재집계해서 항목에 대한 점수를 구하는 방식임.

○ 기관총합평가형

- 질문은 개인별로 이루어지나 점수집계는 개인별로 이루어지지 않고 기관전체로 이루어지는 방식임.
- 설문항목중 부패경험을 나타내는 두 가지 지표인 “부패발생 빈도”와 “부패 규모”의 경우엔 개인별 부패경험 여부·빈도·제공 규모 등을 기관별로 총합해 정해진 수식에 넣어 기관별 점수를 구하는 방식으로 구하였기 때문에 개인별 점수는 없음.

2) 지수산정 방식

(1) 응답자개별평가형 문항 계산 산식

○ 해당항목 : 17개 설문항목 중 “부패발생 빈도”와 “부패 규모”를 제외한 15개 척도형 문항

○ 점수화 방식

- “청렴지수” 산정을 위한 본 조사모델에서는 부패에 대한 경험 부분을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폐쇄형 질문을 제시하고 있으며, 폐쇄형 질문에서 제시하는 응답형태는 7점 척도를 사용
- 설문항목, 하위영역, 상위영역, 청렴도의 점수를 모두 10점 만점으로 제시.
- 청렴도 측정을 위해 각 설문항목별로 7점 척도를 사용하여 조사한 다음에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7점 척도를 10점 만점으로 환산.

$$10 = \frac{(7 - 1)}{6} \times 10$$

- 척도의 배점이 다른 이유는 응답척도의 방향이 문항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임. 긍정적인 응답일수록 10점에 가깝고 부정적인 응답일수록 0점에 가깝도록 배점함.

<표 2-5>는 10점 만점 기준의 청렴지수 도출을 위한 응답항목별 7점 척도의 환산을 위한 배점을 제시하고 있다.

<표 2-5> 7점 척도의 100점 환산 방법

응답항목	7점 척도	배점 [(7점 기준 점수-1)/6]*10
전적으로 그렇다	1	0 or 10
상당히 그렇다	2	1.67 or 8.33
다소 그런 편이다	3	3.33 or 6.67
보통	4	5
별로 그렇지 않은 편이다	5	6.67 or 3.33
거의 그렇지 않다	6	8.33 or 1.67
전혀 그렇지 않다	7	10 or 0

※ 설문내용에 따라 7점 기준 점수배정은 역산됨. 즉, 설문이 부패와 관련하여 부정적인 내용으로 구성된 경우는 좌측 점수를, 긍정적인 내용으로 구성된 경우 우측의 점수를 배정함.

(2) 기관총합평가형 문항 계산 산식

○ 해당문항 : “부패발생 빈도”와 “부패 규모”

○ 설문 문항별 점수산정 방식

- 각 설문에 대한 응답을 점수로 산정하는 방식은 기본적으로 7점 척도를 사용하고 응답자가 표시한 응답을 10점으로 환산하여 활용함
- 그런데, 이러한 점수배정의 문제점이 바로 부패에 대한 경험차원의 점수배정이며, 설문에 대한 응답이 폐쇄형 등급척도(ordinal scale)로 구성되지 않은 부패에 대한 경험차원의 점수배정은 다음과 같음

① “부패발생 빈도”에 대한 점수산정 방식

- 본 조사에서의 부패발생 사례에 대한 점수산정은 해당 경찰서의 업무별로 지난 1년간 금품·향응을 제공한 경험이 있는 비율과 제한된 기간내 동일인이 경험한 금품제공 빈도에 기초하고 있음
 - 조사대상이 되고 있는 경찰서에 대한 응답민원인들의 “금품제공경험 빈도를 (해당 빈도를 구성하는) 응답자 규모와 곱하여 전체 금품제공빈도”를 산정함. 그리고, 전체 금품제공빈도가 산정되면 이를 해당 경찰서에 대한 설문조사 대상자, 즉 전체 표본규모로 나눔으로써 “응답자 규모에 대비한 제공건수의 비율”을 산정함

- 이러한 방식에 기초한 제공빈도 측면에서의 점수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점에서 기존의 조사방식들이 지니고 있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음
 - 기관차원에서의 제공비율에 기초하여 점수를 산정할 경우, 개인차원에서의 1회 제공경험에 대한 왜곡을 시정할 수 있음
 - 그런데, 기관(경찰서) 차원의 금품제공 경험비율에 입각하여 부패발생비율 측면의 점수를 산정하더라도 개개인 차원의 제공빈도를 반영하지 못함. 하지만 위와 같이 제공빈도별로 각각의 해당 구성비율과 곱해 전체 제공빈도를 구하고 이를 응답자 규모에 대비한 비율로 산정할 경우 개개인이 경험한 구체적인 금품제공빈도가 모두 점수로 반영되는 이점이 있음

- 한편 “응답자 규모에 대비한 제공건수의 비율”에 입각하여 산정된 해당 경찰서에 대한 “금품제공빈도 측면에서의 점수”는 <표 7>과 같이 7등분하여 산정됨.
 - 이는 곧 부패발생비율에 입각한 점수는 응답자 개인별로 산정되는 것

- 이 아니라 기관(경찰서)차원에서 산정되고 있음을 의미함
- 즉, 제공빈도에 따른 점수배정은 조사대상 경찰서의 공무원과 접촉한 민원인 가운데 금품이 제공된 전체 건수가 조사대상 민원인 규모의 40% 이상인 경우를 최저점인 1점(완전히 부패한 상태)으로 배정하고, 조사의 표본상 오차 등을 감안하여 금품이 제공된 전체 빈도가 조사대상 표본규모의 1.5% 미만일 경우를 7점(부패가 전혀 없는 상태)으로 배정하고 있음

<표 2-6> 조사대상자 규모에 대비한 전체 금품제공 건수의 비율에 따른 점수배정

40%이상: 1점, 30% 대: 2점, 20% 대: 3점, 10% 대: 4점
5-10%미만 : 5점, 1.5-5%미만 : 6점, 1.5%미만 : 7점

② “부패발생 규모”에 대한 점수산정방식

금품제공이 일부라도 발생한 경우, 금품제공경험이 없는 응답자를 점수산정에 반영하지 않고 단지 경험자에 의해 제공된 금품규모에 입각하여 점수를 산정함

- 제공금품의 규모에 입각한 해당 경찰서의 점수는 금품제공자 가운데 각자가 제공한 금품규모에 따라 배정된 점수와 전체 제공자 가운데 특정 금품 규모를 제공한 응답자의 비율에 기초하여 산정함
- 제공금품의 규모에 따른 점수배정은 <표 8>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7등분되고 있는데, 이는 201만원 이상을 제공한 경우 완전히 부패한 상태로 1점이, 5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7점, 그리고 금품제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8점이 배정됨

<표 2-7> 제공된 금품의 규모별 점수배정

201만원이상 : 1점,	101-200만원 : 2점	51-100만원 : 3점,
31-50만원 : 4점,	16-30만원 : 5점,	6-15만원 : 6점,
5만원 이하 : 7점		

- 그리고, 금품제공규모 측면의 경찰서 점수는 이러한 금품제공경험이 있는 개별사례의 규모에 따른 점수와 전체 경험자(제공자) 가운데 각 금품규모별 제공자의 비율을 산정하여 배정된 점수와 곱해 합산도출함
- 금품제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만 금품제공 규모측면에서의 만점인 8점이 배정되고, 금품제공이 단 한 건이라도 이루어진 경우에는 제공된 금품의 규모에 입각한 점수산정이 이루어지는데, 제공된 금품규모가 모두 201만원이 넘는 경우 가장 부패한 수준인 1점이 배정됨

<표 2-8> 금품제공 규모측면에서의 점수

$$\text{금품규모 점수} = \sum \{(\text{각 금품규모별 제공자} / \text{전체 금품제공자}) \times \text{배정 점수}\}$$

- 이러한 방법의 한계는 극히 소수에 의해 자행된 금품제공규모에 따라 점수가 산정됨으로 인해 금품을 제공하지 않은 절대 다수의 응답자가 직접적으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임. 하지만 금품을 제공하지 않은 절대다수는 실질적으로 부패발생사례(금품제공빈도)에서 이미 반영되었기 때문에 이중적으로 반영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3) 경찰 청렴도 계산 산식

○ “청렴도” 산정방식

- 특정 경찰서에서 업무를 수행할 때 당사자들이 부패에 노출된 정도를 의미하는 “청렴도”는 부패에 대한 개인차원에서의 인식 및 경험을 의미하는 “체감청렴도”와 부패를 유발하는 요인들의 상태를 반영하는 “잠재청렴도”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음
- 해당 기관의 설문항목 점수는 업무별 점수를 평균해서 구하며 각 설문항목 점수에 부여된 가중치를 곱해 각 항목이 속한 하위영역의 점수로 가중평균하고 이렇게 구한 하위영역별 점수에 다시 해당 하위영역의 가중치를 곱해 상위영역 점수를, 마찬가지로 방식으로 체감청렴도와 잠재청렴도를 가중평균해 종합청렴도를 구함.

○ “청렴도”, “체감청렴도” 및 “잠재청렴도”의 산정방식은 <표 2-9>와 같음

<표 2-9> 청렴도, 체감청렴도 및 잠재청렴도 산정방식

청렴도 = (체감청렴도×체감청렴도 가중치 + 잠재청렴도×잠재청렴도 가중치)

- 체감청렴도 = (부패경험 항목의 점수×부패경험항목 가중치+부패인식 항목의 점수×부패인식항목 가중치)
- 잠재청렴도 = Σ [(업무환경, 행정제도, 업무태도, 부패통제 등 4가지 평가항목의 점수)×각 항목의 가중치]

- 경찰서별 청렴도 측정을 위한 계산식

- 평가차원별 청렴도에 평가차원별 가중치를 곱해서 합한 점수
- 평가차원별 청렴도 측정을 위한 계산식
- 평가항목별 청렴도에 평가항목별 가중치를 곱해서 합한 점수
- 평가항목별 청렴도 측정을 위한 계산식
- 평가지표별 청렴도에 평가지표별 가중치를 곱해서 합한 점수

○ “체감청렴도” 산정방식

- 체감청렴도는 부패인식 항목과 부패경험 항목의 가중평균으로 구함.
- “체감청렴도”의 부패에 대한 “인식” 차원의 점수는 설문조사에서 제공되는 응답범위가 해당 설문내용의 정도를 반영하는 7점 척도의 Likert scale을 사용하고 있으나, “경험” 차원의 점수는 설문조사에서 제공되는 응답범위 및 응답에 대한 점수배정이 임의적으로 이루어짐
- 그 결과 조사대상기관의 부패실태와 관련된 인식차원 점수와 경험차원 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가 크게 차이가 나타날 수 있는데, 이는 “체감청렴도”가 인식 또는 경험차원 가운데 편차가 심한 차원의 점수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함.
- 이러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 객관적인 Likert scale을 사용하지 않는 경험차원의 점수를 인식차원의 점수를 기준으로 표준화시켜 합산하는 것임¹⁾
- 따라서 “체감청렴도” 산정을 위한 부패경험차원의 점수는 단순히 금품제공경험 및 금품제공규모에 의해 도출된 점수가 아니라, 이를 부패인식차원의 점수를 기준으로 표준화시킨 점수를 의미하며, 그 구체적인 표준화 방법은 다음과 같음

1) 이러한 방안은 국제투명성기구(TI: Transparency International)에서 부패인지도 지수(CPI: Corruption Perception Index)를 산정하는데 활용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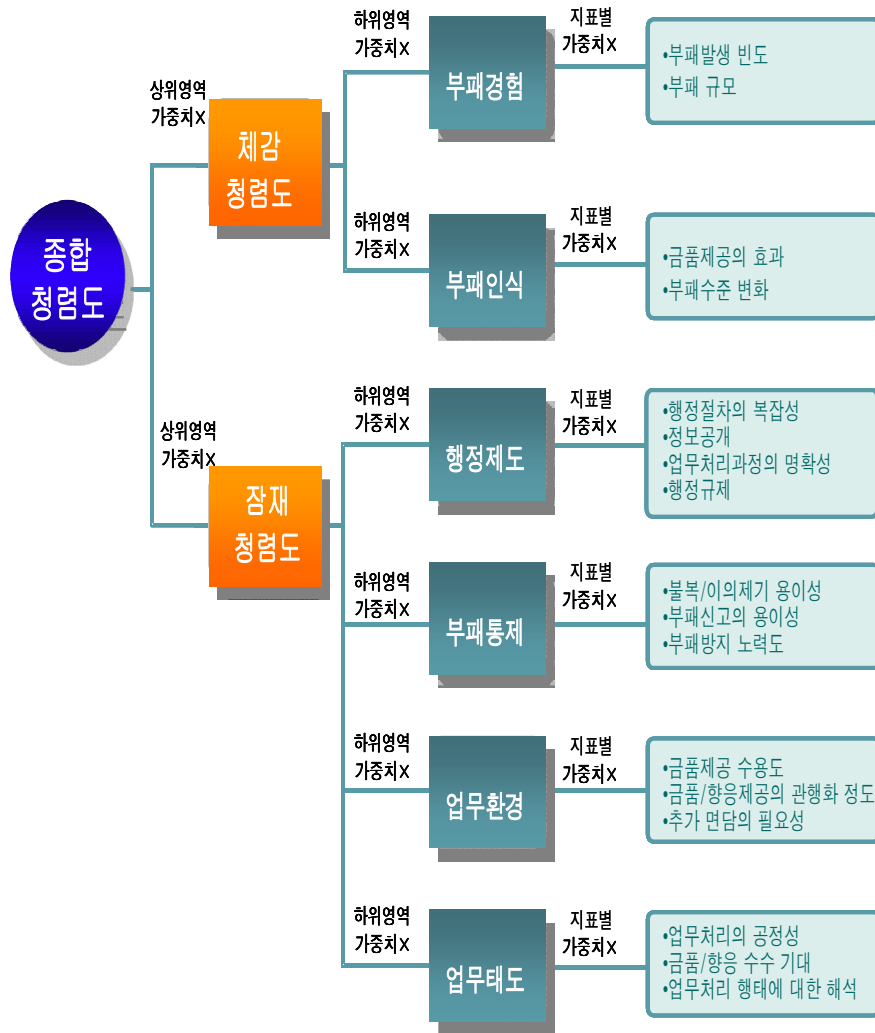
- ① 조사대상 모든 기관의 인식차원 평균점수(μ_1)와 표준편차(σ_1) 산정
- ② 조사대상 모든 기관의 경험차원 평균점수(μ_2)와 표준편차(σ_2) 산정
- ③ 경험차원 점수에 대한 기관별 z-score 산출, 즉 $z=(y-\mu_2)/\sigma_2$
- ④ 도출된 경험차원의 z-score를 인식차원에 적용시켜 인식차원 평균점수를 기준으로 한 기관별 점수 도출, 즉 $y=(z \times \sigma_1) + \mu_1$

○ “잠재청렴도” 산정방식

- 잠재청렴도는 행정제도, 부패통제, 업무환경, 업무태도 등 4개의 각 하위 평가항목 점수에 평가항목별 가중값을 곱하여 구함.
 - 행정제도 항목은 ‘행정절차의 현실성’ 지표와 ‘정보공개 정도’ 지표, ‘업무처리 과정의 명확성’ 지표, ‘행정규제’ 지표의 가중 평균으로 산출
 - 부패통제 항목은 ‘불복·이의제기의 용이성’ 지표, ‘부패신고의 용이성’ 지표, ‘부패방지 노력도’ 지표의 가중 평균으로 산출
 - 업무환경 항목은 ‘금품제공 수용도’ 지표, ‘금품·향응 제공의 관행화 정도’ 지표, ‘추가면담의 필요성’ 지표의 가중평균으로 산출
 - 업무태도 항목은 ‘업무처리의 공정성’ 지표, ‘금품·향응 수수 기대’ 지표, ‘업무처리 행태에 대한 민원인 해석’ 지표의 가중 평균으로 산출

- 이상의 평가구조를 요약하면 아래 <그림 2-2>와 같으며, 실제 응답자에게 물어서 구한 17개 설문지표별 점수에 각 설문지표별 가중치가 곱해져 하위영역 청렴도가 구해지고 여기에 하위영역의 가중치가 곱해져 상위영역 청렴도가 구해지는 방식으로 최종 종합청렴도가 구해짐.

<그림 2-2> 경찰 대민청렴도 평가모형의 구조



2. 조사방법

1) 모집단 및 표본

(1) 모집단

- 본 조사는 경찰서별·업무유형별 경찰행정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부패실태와 더불어 부패유발요인을 파악하고 그 추세를 비교하는데 목적이 있음

- 경찰서별·업무유형별로 경찰행정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부패실태와 부패발생 가능성에 대한 설문조사가 적용되는 민간인들로서의 모집단은 해당 기관과 업무관계에 있는 민간인들로 한정하며, 구체적인 모집단 범주는 다음과 같음.
 - 일정한 기간내 (주로 1년 단위) 인허가나 기타 일회적인 민원업무 처리 경험이 있는 민원인
 - 업무상 해당 기관으로부터 단속과 점검 등 1회 이상의 업무관계가 발생한 민간인
 - 해당 기관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는 등 계약관계가 발생한 민간인

- 모집단으로서의 경찰행정 수요자
 - 지난 1년 동안 경찰서에서 6개 업무분야를 통해 업무처리경험이 있는 일반민원인 : 유해업소 단속, 교통사고조사, 교통단속(음주·무면허 운전자단속 및 일반법규 위반 단속), 총포·도검·화약류 등 소지허가, 계약·관리, 경비업 허가 및 갱신

(2) 표본구성 및 기관별 할당방법

○ 표본의 구성

- 경찰행정에서 발생하는 부패실태와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 대상으로서의 표본은 모집단의 성격이 반영될 수 있도록 경찰행정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함

○ 표본선정을 위해서는 조사대상 기관을 중심으로 위 범주의 민간인들을 모집단으로 규정하여 해당 경찰서로부터 모집단에 포함되는 민간인에 대한 명부를 받아 표본선정을 위한 리스트, 즉 프레임을 구성

- 기관별로 조사결과의 통계적 타당성과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신뢰수준과 오차범위를 고려하여 모집단 규모에 따라 기관별 표본규모가 결정되고, 이들 표본이 위와 같은 프레임내에서 무작위로 선정되어야 함

○ 조사대상이 되는 민간인들의 분류에 기초한 표본선정을 위한 프레임은 다음과 같음

- 일정한 기간내(1년 단위) 민원인이 등재된 기관·부서별 민원접수 대장
- 업무상 해당 기관으로부터 단속과 점검 등 1회 이상의 업무관계가 발생한 민간인 명단 목록
- 총무과 또는 사업부서에서 보관중인 계약사업자 목록

○ 실제 표본구성 및 할당 방법

- 측정업무 수행기관의 특성을 감안하여 일정기준에 따라 분류 후 무작위 계통추출

- 업무수행기관을 지방경찰청별, 경찰서 등급별(1:2:3급지)로 분류하고 표본할당에 기초한 무작위 표본추출

- ※ 조사표본규모가 20~30개 이상이면 정규분포를 따른다는 통계학의 이론(중심극한 정리)을 적용하되, 조사결과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업무별 조사표본이 50표본 이상 되도록 측정업무를 최대 10개 이내로 제한

- 자료제출 기관별로 업무 처리량이 많은 경우 계절성을 감안하여 분기별·월별 추출(홀수월/짝수월, 홀수분기/짝수분기 등)

- ※ 응답거절률과 표본관리행위 방지 등을 고려하여 측정업무별로 조사표본의 3배 이상의 명부가 확보되도록 자료제출 기관별로 제출 표본규모 할당

2) 조사 대상기관 및 조사표본 규모

□ 조사대상기관 표본 선정의 원칙

- 2차년도 조사부터는 전년도 조사기관을 제외한 각 지방청별 경찰서를 대상으로 우선 표본추출
- 매년 각 지방청별 소속 경찰서의 약 25%를 조사함으로써 전 경찰서를 4년 주기로 1회 정도 조사

□ 개 요

- 대상기관 : 전국 239개 경찰서 중 약25%(<표 2-10> 참조)

- 총 조사표본 규모 : 총 3,000표본
 - 16개 지방청별 소속 경찰서의 약 25%를 조사대상 관서로 표본추출
 - 각 경찰서별 6개 조사업무별로 표본을 체계적 비례할당하여 1개 경찰서당 50표본 내외를 유효표본으로 조사

- 기관별 조사표본 : 50표본 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대민업무 규모가 적은 기관은 일부 조정
 - 경찰서 등급을 기준으로 1급지(관서당 50표본), 2급지(관서당 40표본), 3급지(관서당 30표본)별로 유효표본수를 차등 적용하여 계산

- 측정업무별 조사표본 : 10표본 이상 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대민업무 처리건수 및 통계적 신뢰성 등을 고려하여 업무별 조사표본 규모를 할당(단, 처리건수가 적은 경우 전수조사)
- ※ 전국 239개 경찰서 전수조사를 할 경우, 등급을 기준으로 1급지는 각 50부, 2급지 각 40부, 3급지 각 30부의 표본규모를 할당할 때 총 10,110부의 표본 규모임

<표 2-10> 측정대상기관 현황 및 표본 할당 규모

구분 지방경찰청	지방청별 소속 경찰서	경찰서 등급(할당 표본수)			조사대상 경찰서 표본규모 ¹⁾	지방청별 표본규모 ²⁾
		1급지(50)	2급지(40)	3급지(30)		
서울	31	31			8	400
부산	14	14			4	200
대구	9	8	1		2	100
인천	9	7	1	1	2	100
울산	4	4			1	50
광주	5	5			1	50
대전	5	5			1	50
경기도	35	25	5	5	9	450
강원도	17	3	4	10	4	200
충청북도	11	2	2	7	3	150
충청남도	14	4	4	6	4	200
전라북도	15	4	4	7	4	200
전라남도	21	4	4	13	5	250
경상북도	24	5	6	13	6	300
경상남도	22	6	6	10	5	250
제주도	3	2	1		1	50
합계	239	128	37	74	60	약 3,000

※ 주 1) 각 지방청별 소속 경찰서의 약 25%를 조사대상 관서로 표본추출

2) 각 경찰서별 6개 조사업무별로 표본을 체계적 비례할당하여
1개 경찰서당 50표본 내외를 유효표본으로 조사

<표 2-11> 전국 경찰서·지구대 현황(2008년 5월 현재)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경찰서	지구대	경찰서	지구대	경찰서	지구대	경찰서	지구대	경찰서	지구대	경찰서	지구대	경찰서	지구대	경찰서	지구대	경찰서	지구대	경찰서	지구대	경찰서	지구대	경찰서	지구대	경찰서	지구대	경찰서	지구대	경찰서	지구대	경찰서	지구대		
239	826	31	146	14	56	9	37	9	32	5	20	5	18	4	12	35	113	17	46	11	38	14	50	15	48	21	51	24	80	22	72	3	7

제2절 내부 청렴역량도 측정모형의 개발 및 조사방식

1. 내부 청렴역량도 측정모형의 개요

1) 내부 청렴도 측정 목적

- 경찰관서의 반부패·청렴역량에 대한 조직 구성원들의 인식과 경험을 측정
 - 측정 결과 나타난 취약부문에 대한 효율적인 개선방안의 수립과 추진을 지원
 - ⇒ 기관의 반부패·청렴 역량 강화, 내부 부패 척결 및 청렴도 제고노력을 유도

2) 측정 체계

- 내부청렴역량 지수 : 기관의 부패방지 등 청렴성 확보를 위한 제도 구축 및 운영, 조직문화부패통제, 공직자의 행태 및 인사투명성 등 3개 분야 측정

3) 측정 대상기관

- 대민 청렴도 측정대상기관과 동일한 기관(경찰관서)을 대상으로 측정

4) 내부 청렴역량지수 산출방식

- 청렴역량지수 산출 방법

- 청렴역량지수 : \sum 영역별 점수 \times 가중치

(영역별 점수 = \sum 설문항목별 점수 \times 가중치)

※ 설문 항목별, 영역별 가중치는 본조사 전 사전조사를 통해 확정하고, 측정결과 발표시 공개

2. 조사표본규모 및 표본추출

1) 조사표본 규모

- 관서별 100 표본을 기준(80 ~ 120표본)으로 하되, 표본수가 부족한 기관(3급지)의 경우 해당 기관의 가능 표본수만으로 실시

※ 기관별표본수는 통계적 신뢰성 및 유의수준 등을 고려하여 할당

<표 2-13> 내부청렴역량도 급지별 표본 할당 규모

구분 급지	급지별 기능 수	할당 표본수	업무분야별 표본 할당
1급지	9개 내외	100명 이상	업무당 10명 이상
2급지	6개 내외	50명 이상	업무당 10명 내외
3급지	4~5개 내외	30명 이상	업무당 5명 내외

- ※ 주 1) 각 지방청별 소속 경찰서의 약 25%를 조사대상 관서로 표본추출
 2) 각 경찰서별 6개 조사업무별로 표본을 체계적 비례 할당하여
 1개 경찰서당 50표본 내외를 유효표본으로 조사

○ 표본구성 및 할당 방법

- 측정업무 수행기관의 급지별 특성(기능 수)을 감안하여 업무분야(기능)별로 일정 기준에 따라 분류 후 무작위 계통추출
- 경찰서 등급별(1:2:3급지)로 업무분야를 분류하고 표본할당에 기초한 무작위 표본추출

- 표본규모: 조사대상 60개 경찰관서를 모두 1급지로 할 경우 약 6,000 표본 내외

2) 직원명단 제출 범위

- 기관별 직원명단 범위 : 경정 이하 전 직원의 명단 제출

3) 표본추출 방식 및 기준

- 표본추출 방식
 - 표본오차 최소화를 위해 측정대상기관에서 제출한 명부에 대하여 DB 구축 후 무작위 표본추출

- 표본추출 대상기간 : 전년도 7. 1 ~ 당해년도 6. 30
 - 계절별 민원성격 및 업무내용의 차이를 반영하기 위해 최근 1년간(12개월)을 표본추출 대상기간으로 설정
 - 이는 권익위의 조사대상기간(전년도 8. 1~당해년도 6. 30)보다 앞서 경찰청 자체적인 조사가 선행됨으로써 사전 내부점검과 평가 및 권익위 평가에 대비하기 위함임.

- 측정 대상기준 : 2008. 6. 30 현재
 - ※ 근무경력 1년 이하인 직원, 기능직과 비정규직직원(일용직 등)은 제외

- 표본추출 방식
 - 직원리스트를 **경찰서별, 직급별로 층화**하고 직급별 비율에 따라 직급별 측정표본을 비례할당
 - ※ 표본선정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조사담당기관(고객만족모니터센터)에서 명부에 대한 DB를 구축하고 기관별·직급별로 할당된 표본 수 추출
 - ※ 직급구분은 「공무원평정규정」, 「공무원보수업무등처리지침」에 의거한 상당계급을 기준으로 분류

제3장 경찰 관서별 청렴도 조사설계

제1절 경찰청렴도 조사의 체계

1. 경찰 청렴도 조사의 개요

1) 조사의 성격과 목적

- “경찰관서 청렴도 측정 모형”을 경찰행정분야에 실질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치안행정의 청렴성과 투명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 “경찰관서 청렴도 측정 모형”은 공직부패를 척결하기 위한 새로운 방안의 하나로서, 개별 행정기관 또는 하위업무분야(조직단위)의 “부패실태 및 부패발생가능성”에 입각하여 “행정기관 또는 하위업무분야(조직단위)별 “체감청렴지수”와 “잠재청렴지수”를 포괄하는 청렴지수”를 산출함
- 경찰행정 업무분야 및 주변분야에 대한 조사결과와의 추이분석을 통하여 지방경찰청별·경찰서별·업무별 청렴지수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함

2) 조사내용

(1) 경찰행정 전반의 청렴지수 등 부패관련 실태와 추세

- “경찰행정 전반에 대한 청렴지수”와 함께 경찰행정 전반의 부패실태 및 부패발생 개연성 등을 중심으로 한 “부패에의 노출된 상태”를 규명하고, 이를 기존 조사결과(전년도 조사결과 및 외부기관(국가청렴위원회) 조사결과)와 비교 분석함
- 청렴지수를 비롯한 각종지수의 파악·분석
 - 경찰서별·업무별 청렴지수와 이를 구성하는 체감청렴지수 및 잠재청렴지수 등 하위지수를 파악하고, 부패관련 실태를 보다 정확하게 반영하는 차원 및 세부설문항목별 결과를 분석함

(2) 경찰서별·업무별 청렴지수 등 부패관련 실태와 추세

- 경찰행정 업무분야별·경찰서별 부패실태 파악
 - 조사단위가 되고 있는 경찰서 및 경찰행정 업무분야별로 일반민원인들을 대상으로 업무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부패관련 실태를 비롯한 문제요소를 파악하고자 함
- 경찰서별·업무별로 직면하고 있는 부패실태와 함께 부패발생가능성을 규명하고, 이를 전년도 경찰청렴도 조사결과, 경찰행정 고객만족도 조사, 그리고 국가청렴위원회의 청렴도 조사 등 기존 조사결과와 비교 분석함
 - 경찰서별 부패실태 규명 및 추세 비교
 - 경찰행정 업무분야별 부패실태 규명 및 추세 비교

(3) 경찰서별·업무별 내부청렴역량지수 파악

- 경찰관서의 반부패·청렴역량에 대한 조직 구성원들의 인식과 경험을 측정
 - 측정 결과 나타난 취약부문에 대한 효율적인 개선방안의 수립과 추진을 지원
 - ⇒ 기관의 반부패·청렴 역량 강화, 내부 부패 척결 및 청렴도 제고노력을 유도
- 경찰관서의 부패방지 등 청렴성 확보를 위한 제도 구축 및 운영, 문화·부패통제, 공직자의 행태 및 인사투명성 등 3개 분야 측정

3) 측정 체계

(1) 경찰청렴역량 측정모델의 측정체계

- 대민 청렴도 지수 :
 - 경찰업무분야 중 민원발생 및 부패발생 소지가 높은 4대 단속·허가분야 및 2대 민원발생 다발 분야에 걸쳐 부패행위가 없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처리가 이루어진 정도에 대한 민원인의 경험인식 정도를 측정
 - 4대 단속·허가분야: 유해업소 단속, 교통단속(음주·무면허 운전자 단속 및 일반법규 위반 단속), 교통사고 조사, 총포·도검·화약류 등 소지허가
 - 2대 민원발생 다발 분야: 수사·조사관리, 계약관리
- 내부 청렴역량 지수 :
 - 경찰관서의 부패방지 등 청렴성 확보를 위한 제도 구축 및 운영, 문화·부패통제, 공직자의 행태 및 인사투명성 등 3개 분야 측정

<표 3-1> 경찰 청렴역량 평가모형 측정체계 중 대민청렴도 평가모형

평가차원	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가 지표(설문항목)	조사대상
대민청렴도지수 측정모형	체감 청렴도	개인적 경험	▪ 금품·향응 제공 빈도	민원인
			▪ 금품·향응 제공 규모	
		개인적 인식	▪ 금품·향응 제공의 효과	
			▪ 부패수준 변화	
	잠재 청렴도	행정제도	▪ 업무처리 기준·절차의 복잡성	
			▪ 업무처리 기준·절차 등의 정보공개 정도	
			▪ 업무처리과정의 명확성	
			▪ 업무처리시 불필요한 요구 정도	
		부패통제	▪ 불복·이의제기의 용이성	
			▪ 부패신고의 용이성	
			▪ 부패방지 노력도	
		업무환경	▪ 금품·향응 제공 수용도	
			▪ 금품·향응 제공의 관행화 정도	
			▪ 추가 면담의 필요성	
		업무태도	▪ 담당자의 업무처리 공정성	
			▪ 담당자의 금품·향응 수수 기대 정도	
▪ 업무처리 행태에 대한 민원인 해석 정도				

<표 3-2> 경찰 청렴역량 평가모형 측정체계 중 내부청렴역량 평가모형

내부청렴역량지수 측정모형	제도 구축 운영	부패통제 제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패방지를 위한 행동기준의 구체성 ▪ 자체감사계획 수립의 구체성 	경찰관		
		부패통제 제도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패방지를 위한 행동기준의 운영 실효성 ▪ 내부고발제도의 운영 실효성 ▪ 공정한 직무수행의 확보제도 운영 실효성 ▪ 이해관계 직무회피 제도 운영의 실효성 ▪ 업무처리 기준·절차 및 처리과정의 정보공개 수준 ▪ 개인 및 부서의 평가시 청렴성 반영 정도 			
			조직문 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직내 부패행위의 관행화 정도 ▪ 조직내 공/사 구분의 명확화 정도 ▪ 조직내 부패에 대한 용인정도 	
					부패통 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패방지를 위한 윤리규정에 대한 직원들의 내면화 정도 ▪ 민원인의 이의 제기에 대한 충실한 처리 정도 ▪ 자체 사고 축소·묵살 방지 개선 노력 정도 ▪ 부패방지를 위한 기관장 노력도
						자체감 사 역량
			간부· 직원청 렴도			
		인사 투명성				

(2) 기관별 청렴도 산출방식

◇ 경찰 청렴역량도 산식 ◇

(1) 종합청렴역량도 = 대민청렴도지수(50%) + 내부청렴역량지수(50%)

(2) 대민청렴도지수 = 체감청렴도×가중치 + 잠재청렴도×가중치

· 체감청렴도 = 부패경험영역 점수×가중치 + 부패인식영역 점수×가중치

· 잠재청렴도 = Σ (업무환경·행정제도·개인태도·부패통제 점수)×영역별 가중치

· 하위영역별 청렴도 = Σ (영역내 항목점수×항목별 가중치)

(3) 내부청렴역량지수 : Σ 평가영역별 점수 × 가중치

· (평가영역별 점수 = Σ 설문항목별 점수 × 가중치)

※ 설문 항목별, 영역별 가중치는 '08년 6 ~ 7월 경 확정, 측정결과 발표시 공개

- 종합청렴역량도는 대민청렴도 점수와 내부청렴역량도 점수를 각 50%씩 반영 후 산술평균하여 산출
- 평가항목별 점수산정 방식
 - 리커트 7점 척도를 10점으로 환산

<표 3-3> 척도별 점수환산 현황

척도	응답내용	환산점수
1	완전히 그렇다	0 또는 10
2	상당히 그렇다	1.67 또는 8.33
3	다소 그런 편이다	3.33 또는 6.67
4	보통이다	5.0
5	별로 그렇지 않은 편이다	6.67 또는 3.33
6	거의 그렇지 않다	8.33 또는 1.67
7	전혀 그렇지 않다	10 또는 0

- 금품·향응 제공빈도 및 규모항목(비리커트 척도) : 기관별 제공빈도·규모의 분포를 이용하여 점수화

$$\text{금품/향응 제공빈도(규모) 점수} = \frac{10 \times \left(1 - \frac{\text{기관별 응답자 평균제공빈도(규모)}}{\text{UCP}} \right)}{1}$$

* UCP는 기관별 제공빈도(규모) 누적감마확률분포의 95%에 해당되는 값

* 기관별 응답자 평균제공빈도(규모) = 총제공빈도(규모)/기관전체응답자

4) 대민 청렴도 측정대상 업무

(1) 측정대상업무 선정기준

- 측정업무 : 경찰의 대민업무 중 우월적 결정이나 처분 등으로 부패발생 소지가 높은 업무를 선정
 - 인·허가, 지도단속, 검사 등 경찰서가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업무 외에 대등한 지위에서 행하는 계약업무도 포함
 - ※ 측정업무 선정시 부패공직자DB, 사법처리 현황, 부패관련 기사 등을 참고하여 기관의 취약업무 분야를 발굴
- 제외업무 : 반복적인 행정절차에 의해 처리되는 단순업무 등
 - 단순 반복적인 행정절차에 의해 처리되는 업무 : 업무상담, 단순 질의회신, 증명서 발급 등
 - 측정대상기관에 대한 이의신청 등 고충민원업무 : 진정민원 등
 - 단순한 요식행위에 의해서 종료되거나, 민원인과의 업무접촉이 발생하지 않는 업무 : 전자공시, 인터넷 민원업무 등
 - 기타 처리건수가 적어 전화조사가 곤란한 업무 등

(2) 경찰 업무 중 부패취약 업무분야

경찰업무에 있어서 부패가 발생하는 분야를 유해업소 단속관련 부패, 교통관련 부패, 그리고 형사·조사업무 관련 부패유형으로 분류하여 보면 다음과 같음

① 유해업소 단속 관련 부패 유형

- 유해업소에 대한 합동단속시 단속 시간과 장소를 알려주고 영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 윤락행위 및 음란행위를 하고 있는 유해업소임을 알고도 묵인하는 조건으로 향응을 제공받거나 및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 미성년자 고용 유해업소임을 알면서도 묵인하는 조건으로 향응을 제공받거나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② 교통분야 관련 부패 유형

- 교통사고 및 교통법규위반자에 대한 제재를 경감해주는 대신 사례금 수수
- 음주운전 적발시 금품수수
- 음주운전자로부터 면허 취소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금품수수
- 화물차량의 적재규정불이행 묵인조건으로 금품수수
- 음주 및 교통위반차량의 단속시 경찰관의 금품요구 및 압력행사
- 토착비리 유형으로서 불법 주·정차 위반이 많은 업소로부터 정기적인 금품수수
- 교통사고를 야기한 무면허 운전자로부터 금품수수 후 사건묵살
- 교통사고 묵살조건으로 금품수수
- 교통사고관련자로부터 금품수수

- 운수회사 또는 관내를 통과하는 운수회사의 위반행위목인조건으로 정기적인 금품수수

③ 형사·조사업무 관련 부패 유형

- 가해자와 피해자를 뒤바꾸는 사례
- 사건을 부당하게 축소·은폐·무마하는 사례
- 피해자로 하여금 합의를 반강제적으로 종용하는 사례
- 사건처리를 부당하게 지연시킴으로써 피해자의 피해구제를 곤란하게 하는 사례
- 피해자의 약점을 부각하여 정당한 권리 주장을 못하게 하는 행위
- 사건을 부당하게 확대하는 사례
- 체포·구속 등 인신구속을 남용하는 사례
- 협박을 통한 합의금을 과다하게 책정하도록 하는 사례
- 전과기록 등을 내세워 정당한 권리주장을 못하게 하는 사례
- 사건을 수사하면서 피의자에게 특정변호사를 소개·알선하고 금품수수
- 범죄단속을 위해 업소에 출입하여 불법행위를 목인하고 금품수수
- 경찰서 유치장이나 대용감방에 수감된 구속 피의자에 대하여 편의를 제공하고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3) 조사대상 업무분야

○ 6개 업무

- 유해업소 단속, 교통사고조사, 교통단속(음주·무면허 운전자단속 및 일반법규 위반 단속), 총포·도검·화약류 등 소지허가, 계약·관리, 경비업 허가 및 갱신

<표 3-4> 조사대상 업무

기관명	측정대상업무	제출 대상 기관
지방경찰청	1. 교통사고 조사	표본추출 대상 경찰서
	2. 유해업소 단속	"
	3. 음주·무면허 단속	"
	4. 총포·도검·화약류 등 소지 허가	"
	5. 경비업 허가 및 갱신	"

※ 수사·조사업무의 경우 이해관계자간 입장 차이로 인해 편견 및 갈등 소지가 있어 2007년 국가청렴위원회 청렴도 측정 대상업무였던 ‘경비업 허가 및 갱신’으로 대체

○ 각 업무분야별 구체적 사항은 다음과 같음

생활안전 분야

○ 유해업소 단속 - 유흥업주로부터 금품수수

교통 분야

○ 교통단속 - 일반 법규위반행위, 음주·무면허 운전자 단속

○ 교통사고조사 - 사고 당사자로부터의 청탁

○ 교통지도 - 대형 행사, 기념일에 교통정리에 따른 수고비 수수

수사관리

○ 수사정보 유출

○ 전산조회 내용 유출

○ 협의내용 축소·은폐·무마 및 신속처리 등의 대가로 금품수수 및 향응·접대를 수수하는 행위

- 피해자로 하여금 합의를 반강제적으로 종용하는 대가로 금품수수 및 향응·접대를 수수하는 행위
 - 사건처리를 부당하게 지연시킴으로써 피해자의 피해구제를 곤란하게 하는 대가로 금품수수 및 향응·접대를 수수하는 행위
 - 피해자의 약점을 부각하여 정당한 권리 주장을 못하게 하는 행위
 - 사건을 부당하게 확대하는 행위
 - 체포·구속 등 인신구속을 남용하는 행위
-
- 청렴위의 청렴도 측정 대상 분야
 - 「총포·화약류 허가」와 「계약관리」부분 포함 요망
-
- 기타
 - 명절 떡값 수수
 - 인사철 인사청탁 대가 수수

2. 경찰 청렴도 조사의 추진방법

1) 설문조사방법 및 유의사항

(1) 대민 청렴도 조사방식

- 측정대상업무와 관련하여 경찰관서와 직접 접촉경험이 있는 민원인 등에 대한 전화설문조사 실시
 - 조사대상자의 익명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예산절약을 위해 “면접조사”를 피하고 “전화조사” 방식을 택함
- 조사과정의 유의사항
 - 조사담당기관인 고객만족모니터센터에서는 조사의 공정성·신뢰 확보를 위해 공식적인 조사결과 발표 전에 대외유출을 금하는 등 보안에 만전을 기해야 함
 - 본 조사가 민원인이 경찰의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인 금품수수를 비롯한 부정부패행위에 관한 인식도 조사인 만큼, 조사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사과정에서 조사대상자의 신분 등에 대한 익명성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함

(2) 내부 청렴역량도 조사방식

- 경찰서 경찰관(경정 이하)을 대상으로 전자메일에 의한 온라인조사로 실시

- 설문지를 보안성이 보장되는 고객만족모니터센터의 온라인 DB에 게재하고 대상 직원이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설문응답

(3) 조사와 분석·해석의 이원화

- 조사담당기관과 조사결과에 대한 분석·해석 담당기관을 이원화하여 조사의 전문성 제고 및 조사결과의 정책 환류 제고
 - 조사담당기관: 고객만족모니터센터
 - 조사결과에 대한 분석·해석 담당기관: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4) 조사표본 누락방지 및 측정결과 검증

- 제출표본 및 조사결과 검증시스템 구축
 - 제출표본 누락·조작, 유리한 응답유도 등 표본관리행위에 대한 방지장치를 강구하여 청렴도 측정결과의 신뢰도 제고
- 조사표본 누락 및 표본관리 방지방안
 - 자료제출 기관 및 제출표본 규모를 확대하여 표본관리 가능성 축소
 - 제출명부 누락 또는 조작 여부에 대한 현지확인 점검 강화
 - 조사표본에 대한 무작위 검증 : 익명성을 최대한 보장하여 유리한 응답행위 여부에 대한 무작위 검증 실시
- 신뢰도 저해행위 발생시 처리방안
 - 조사대상 표본(민원인명부) 누락 또는 조작시
 - 누락표본은 추가조사 후 우선적으로 반영
 - 해당사실을 측정대상기관장에 통보
 - 고의적인 누락 또는 조작시 조사결과 무효화

- 표본관리 행위로 신뢰도에 영향을 미친 경우
 - 대체표본을 통한 재조사 실시
 - 당해표본 최저점 부여 또는 기관 청렴도 집계 제외
 - 측정결과 공개시 해당사실 대외공개
 - 측정기관(또는 감독기관)에 관련자 인사조치 등 요구

2) 중요도 조사

조사 전에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간 중요도(가중치) 산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중요도 산정을 위한 방법은 계층절차분석(AHP)기법을 이용토록 하고, 조사대상자는 부패관련 전문가·시민단체 인사 및 일반시민·경찰 내부 인사 등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 본 조사 전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간 중요도(가중치) 산정을 위한 조사 실시
- 중요도 산정을 위한 방법은 계층절차분석(AHP)기법을 이용
- 조사 대상자는 부패관련 전문가·시민단체 인사 및 일반시민·경찰 내부 인사 등을 대상으로 가중치 조사

3) 자료제출 대상 경찰서 선정방법

○ 조사대상 기간 또는 전년도 통계조사 결과, 측정대상업무 전반에 걸쳐 각 지방경찰청별로 민원인들의 이의제기(측정대상기관에 대한 이의신청 등 고충민원) 건수와, 비리 등으로 인한 징계처분 건수가 많은 산하 경찰서를 우선 선정

○ 조사대상 관서 선정 기준

- 조사대상 기간 동안 경찰관 비위징계 건수 다발 관서 우선 선정
- 조사대상 기간 동안 경찰관 범죄 및 비리행위자 다수 발생 관서 우선 선정
- 조사대상 기간 동안 경찰청 정기종합사무감사 및 특별감찰활동에서 지적 다발 관서
- 조사대상 기간 동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규정한 부패행위자 발생 관서 및 경찰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경찰관서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위의 기준이 동일할 경우 비위징계 건수 및 부패행위자 상위 발생 관서 우선 선정

※ 16개 지방청에서는 위와 관련된 자료를 2008. ○. ○ 까지 본청 감사관실 감찰담당관에게 제출

제2절 조사결과의 분석사항 및 조사추진일정

1. 조사결과의 분석사항

조사결과 보고서 기술 순서 및 정책자료로의 활용을 위한 분석은 다음 사항을 담고 있어야 한다.

(1) 조사의 개요

- 조사목적, 조사설계
- 표본특성
 - 지방청별 분포, 급지별 분포, 민원업무분야별 분포, 계급별 분포, 연령대별 분포
- 청렴도 측정모델
- 측정 항목
- 청렴도지수 측정산식: 대민청렴도지수, 내부청렴역량지수, 종합청렴도지수 산출식
 - 평가차원별(대민청렴도지수, 내부청렴역량지수) 청렴도지수 산출 후 종합청렴도지수 산출
 - 지방청별, 급지별, 관서별, 민원업무분야별 청렴지수 산출
 - 평가영역별, 평가항목별, 세부평가지표(설문항목)별 청렴도 지수 산출
- 척도 환산방법 : 7점 척도의 10점 만점 점수 환산방법
- 금품제공 빈도 및 규모 점수화 공식

(2) 조사의 인구통계학적 분석

(3) 조사결과의 요약

- 지방청별·관서별·급지별·민원업무분야별 대민청렴지수 조사결과 요약
- 지방청별·관서별·급지별·민원업무분야별 내부청렴역량지수 조사결과 요약
- 지방청별·관서별·급지별·민원업무분야별 종합청렴역량지수 조사결과 요약

(4) 종합청렴역량도 지수 분석

- 대민청렴도지수 평가차원의 분석 종합
 - 지방청별·관서별·급지별·민원업무분야별 대민청렴지수 분석
 - 민원업무분야별 대민청렴지수 분석: 지방청별·관서별·급지별 분석
- 내부청렴역량지수 평가차원의 분석 종합
 - 지방청별·관서별·급지별·평가영역별 내부청렴역량지수 분석
- 종합청렴역량지수 분석 종합

(5) 대민청렴도지수 분석

- 지방청별·관서별·급지별 대민청렴지수 분석
- 민원업무분야별 대민청렴지수 분석
- 평가영역별(체감청렴도, 잠재청렴도) 청렴지수 분석
- 평가항목별 청렴지수 분석
 - 체감청렴도 영역의 개인적 경험·인식 청렴지수 분석
 - 잠재청렴도 영역의 행정제도, 부패통제, 업무환경, 업무태도 청렴지수 분석

(6) 내부청렴역량지수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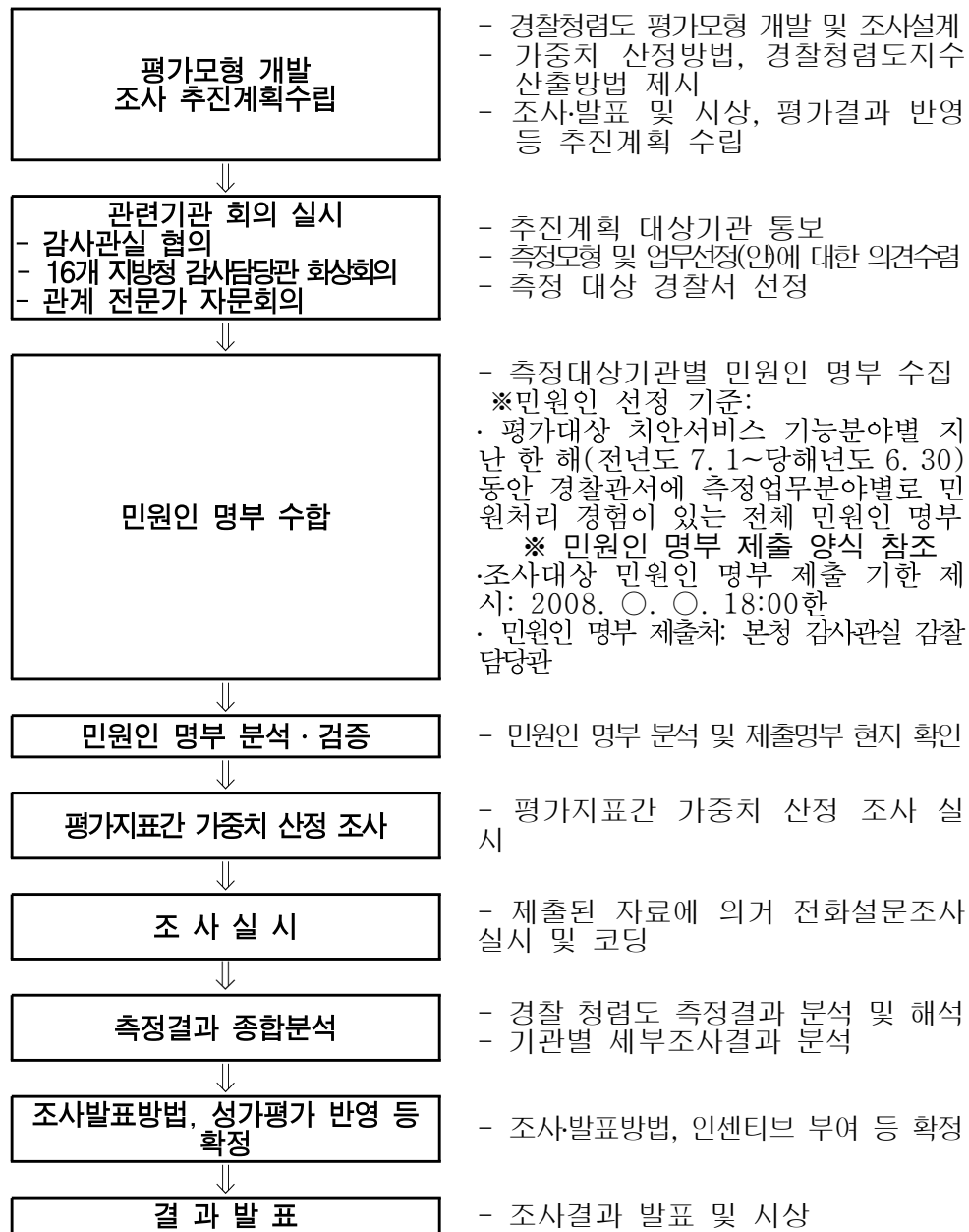
- 지방청별·관서별·급지별 내부청렴역량지수 분석
- 평가영역별 청렴지수 분석
 - 부패통제제도 구축
 - 조직문화·부패통제역량
 - 공직자 행태·인사투명성
- 평가항목별 청렴지수 분석
 - 부패통제제도 구축 영역의 부패통제제도 구축, 운영 항목
 - 조직문화·부패통제역량 영역의 조직문화, 부패통제, 자체감사역량 항목
 - 공직자 행태·인사투명성 영역의 간부·직원 청렴도, 인사투명성 항목

(7) 개방형 질문 응답 결과 요약 정리

(8) 종합 진단 및 정책적 함의·개선방안

2. 설문조사 추진일정

<표 3-5> 설문조사 추진일정



제4장 조사결과의 활용방안

제1절 조사결과의 정책적 활용방안

조사결과가 피평가기관의 청렴도 지수와 순위를 산정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경찰조직 관리운영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데 순기능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조사결과의 정책적 활용도를 제고하는 것이 대단히 필요하다.

이를 위해 조사 결과가 치안정책 수립 및 개선에 적절히 반영되어야 한다. 구체적인 활용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찰관서 청렴도 측정 결과 산출된 정보를 환류하여 기관장 인사 및 성과급 차등화 자료로 활용하는 동시에, 해당 경찰관서의 부패정도 및 치안정책 자료로 적극 활용토록 한다. 이때 청렴도 순위가 높은 지방청과 경찰서(평가대상 관서 중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시상·포상하고 재정적 인센티브도 제공하여 차등화함으로써 피평가기관이 차년도 평가부터 보다 나은 점수를 달성하기 위한 자발적 개선노력이 고취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수기관에 대한 인센티브는 구체적으로 차기 연도 자체청렴도 평가 면제 및 청렴인증경찰서 지정, 정기 일반감사 1년 유예 및 기관표창 상신, 개인 우수 유공자는 표창 대상자로 우선 선발하고, 조사결과는 각 기관별 시간외 수당 등에 대한 예산에 차등 배분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청렴도 측정 결과 청렴지수가 낮은 업무분야 및 경찰서에 대한 조치 방안으로는 다음 사항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평가결과 각 년도 하위 20% 경찰관서에 대해서는 기관주의(2회 연속 선정시 기관경고) 및

소속 상급기관(지방청) 감사관실에 자체 청렴도 향상대책과 이를 반영한 감사계획을 의무적으로 작성·보고하게 하고 특별감찰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한다. 이와 함께 각 지방청 감사관실은 주기적으로 소속 경찰서의 이행정도 및 개선정도를 점검·평가하고, 본청 감사관실에 경과조치사항 및 성과를 분기별로 보고하도록 한다. 본청 감사관실은 경찰청장께 특별보고하여 지휘관 회의시 수시로 지시·독려할 수 있도록 정책자료를 제공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2차년도 평가 이후부터 조사결과를 기관장(경찰서장) 인사고과(치안종합성과평가)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평가결과는 관서장 인사고과(치안종합성과평가)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되 반영비율의 합리적 조정이 필요하다. 한국철도공사의 경우 자체 청렴도 평가 점수를 각 지사별 내부경영평가에 8% 반영하고, 간부급 청렴도 평가 결과는 연봉에 10%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투명성과 책무성 제고를 위한 기관장의 각별하고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단, 물리적 한계로 인해 매년 각 지방청 소속 경찰서 중 약 25%만 평가대상 관서로 선정되므로 평가제외 기관장에 대한 인사고과 반영의 합리적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당해 연도 평가에서 제외되는 경찰서의 경우, 16개 지방청별로 평가대상 경찰서의 종합평균점수를 환산하여 치안종합성과평가에 반영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A지방청 소속의 조사대상 경찰서가 5개일 경우, 각 그룹 내 지방청별 상대적 순위와 평가대상 경찰관서의 평균점수를 환산한 점수를 치안종합성과평가에 반영하는 방안이다.

셋째, 구조적 취약분야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도록 한다. 각 기관(경찰관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낮은 부패취약 업무분야에 대하여는 집중적인 컨설팅 및 제도개선 지원을 본청 차원에서 조치해 나가도록 한다.

넷째, 비리행위자 및 청렴도 훼손자에 대한 퇴출제를 도입하도록 한다. 경찰조직에 대한 국민신뢰를 저해하는 비리행위를 저지른 부적격 인사 및 청렴도 훼손행위자 발생시, 인사기록관리시스템을 활용한 경력을 추적·관리하여 향후 모든 근무지에서 민원업무 보직에서 배제시키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타 관서 전보시에도 유사민원업무(교통사고조사, 경비업 허가갱신 등)를 담당하지 못하도록 하고, 내근업무에서의 퇴출 및 근무평정에서 별점 부과, 그리고 성과급 미지급 등의 불이익 조치도 함께 구사할 수 있을 것이다.

제2절 조사 결과 시상·포상 방법

각 지방청별 소속 경찰관서 수의 차이로 인해 조사결과에 대한 피평가기관의 불만을 최소화하고, 표창·시상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소속 경찰서 수를 기준으로 3개 그룹으로 구분하여 그룹 내 기관별 순위에 따른 청렴도 우수기관을 선정·발표하도록 한다.

<표 4-1> 소속 경찰서 규모별 조사결과 시상·포상의 유형군

유형	지방청별 경찰관서 수 분포	지방청 수	대상 지방청
A군(群)	21개 이상	5	서울, 경기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B군(群)	11 ~20개	5	부산,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C군(群)	10개 미만	6	대구, 인천, 울산, 광주, 대전, 제주도

제3절 조사결과의 발표방법

1. 조사결과 발표방법의 의의

주관적 인지도를 평가하는 부패체감도에 대한 조사는 평가지표체계, 자료수집과 표본구성, 그리고 측정과정에서 다양한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존하여 평가결과에 대한 피평가기관의 완전한 신뢰성을 확보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일정부분 이러한 평가의 한계를 인정하고, 모형의 지속적인 수정·보완을 통해 합리적인 평가모형을 개선해 나가는 동시에, 조사결과 발표방법에 있어서 조사 목적 달성을 극대화하고, 조사결과에 대한 피평가기관의 동의 확보와 불만을 최소화하는 것이 평가의 실효성을 제고시켜 나갈 수 있다.

2. 경찰 청렴도 조사결과의 발표방법

경찰 청렴도 평가의 목적을 피평가기관에 대한 통제·감독의 수단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피평가기관의 반부패 자정노력 제고와 피평가 기관간 반부패 노력의 경쟁·고무에 둘 것인지를 판단할 때 경찰조직의 특성상 양자 모두를 달성하는 데 평가의 목적을 두어야 할 것이다.

아래에서는 조사결과 발표방법과 관련하여 3가지 대안을 제시한 후 가장 합리적인 최적 발표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1) 조사결과 발표방법 대안 검토

(1) 제 1 대안

1안

- ○ 기관별 종합순위는 상위 경찰서만 발표(최우수1, 우수2, 장려3)
- ○ 분야별로는 순위를 매기지 않고 견제순으로 기관별 지수와 개선도 발표

- 서열위주의 발표방식을 지양하고 기관별 개선도 위주의 발표로 각급 기관의 자정노력 강화

- 종합순위 상위기관 발표 및 표창·시상 등 인센티브 부여로 우수 기관의 자긍심 고취 및 반부패 노력 강화

(2) 제 2 대안

2안

- ○ 종합순위와 분야별 조사결과 모두 상·중·하위권 3개 그룹으로 구분하여 그룹별로 발표(※ 상위권 25%, 중위권 45%, 하위권 30%로 할당)
- ○ 종합순위 상위 6개 경찰서는 순위 발표(최우수1, 우수2, 장려3)

- 분야별로 상중하 그룹별로 발표함으로써 경찰서간 위화감 완화

(3) 제 3 대안

3안 - ○ 기관별 종합순위 및 분야별 순위와 청렴지수를 전 경찰서에 걸쳐 발표

- 전 경찰서에 대한 종합순위 평가 발표로 경찰청의 반부패 척결에 대한 의지 천명
- 종합순위 발표와 함께 업무분야별로 기관지수·개선도를 발표하는 <1안>이나, 업무분야별로 상·중·하 3개 그룹으로 구분 발표하는 <2안>에 비해, 전 기관의 순위와 청렴지수를 모두 공개함으로써 경찰서간 경쟁 유도 가능
- 인센티브 차등화(기관장 인사·보수 및 표창·시상 등)와 연계하여 종합순위 상위기관 발표로 우수기관의 자긍심 고취 및 반부패 노력 강화 유도 가능

2) 발표방법 최적 대안

최종 발표방법의 선정기준은 평가의 목적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지속적인 자체 청렴확보 대책을 수립·집행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사전예방적 부패통제메커니즘’이 작동할 수 있도록 고안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를 위해 기관별 종합순위는 상위 기관(25%)만 발표하고, 나머지는 중·하 그룹별로 구분하여 청렴지수와 2차년도 이후 전년 대비 개선도를 발표하도록 한다.

단, 하위 10%에 속하는 경찰서의 경우 집중 감찰(감사)을 실시하고,

자체적인 부패방지 계획과 대책을 수립하여 본청 감사관실에 보고하도록 하고, 각 기관별 부패방지 교육을 강화하도록 강제한다. 나아가 지휘관 평가에 반영하여 익년도 성과급 지급시 불이익을 주는 것과 동시에, 인사시 반영하도록 한다.

최종 발표방법의 선정기준은 평가의 목적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지속적인 자체 청렴확보 대책을 수립·집행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사전예방적 부패통제메커니즘’이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즉, 청렴도 평가제도 시행의 효과가 고스란히 확보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측정결과의 발표를 통해 피평가기관의 경쟁적 유인체계(competitive incentive system)가 확보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서도 하위 순위기관에 대해 지나친 처벌을 초래하는 결과가 초래되지 않도록 유의하는 것도 충족되어야 한다.

최적대안

- 종합순위와 분야별 조사결과 모두 상·중·하위권 3개 그룹으로 구분하여 그룹별로 발표(※ 상위권 25%, 중위권 45%, 하위권 30%로 할당)
- 종합순위 상위 6개 경찰서는 순위 발표(최우수1, 우수2, 장려3)

따라서 이를 위해 기관별 종합순위는 상위 기관(25%)만 발표하고, 나머지는 중·하 그룹별로 구분하여 청렴지수를 발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된다. 이는 분야별로 상·중·하 그룹별로 발표함으로써 경찰서간 위화감을 완화하고자 하는 의도를 담고 있다. 또한 2차년도 이후부터는 전년 대비 청렴도 개선정도를 함께 발표하고 개선을 우수 기관에 대한 시상도 추가하도록 한다.

제4절 조사결과의 정책적 환류 제고방안

1. 청렴도 측정의 원칙

청렴도 측정에 있어서 계속성의 원칙, 정량성의 원칙, 정확성의 원칙이 확보되어야 한다.

첫째, 청렴도를 과거·현재·미래와 비교할 수 있는 계속성의 원칙이 확보되어야 한다. 청렴도가 시간의 변화에 따라 어떻게 변화되는지 시계열적인 분석을 통해 파악하고, 문제점과 개선정도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한 번의 조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주기적으로 조사를 시행해야 한다.

둘째, 항목간 비교가 가능하도록 정량적인 조사여야 한다. 이를 위해 가급적 청렴도 수준을 항목화 시키고 수량적 데이터로 점수화 시키는게 필요하다.

셋째, 정확한 조사와 해석이 필요하다. 보통 주관적 인식도 조사는 설문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설문조사 시 설문지의 설계와 설문내용의 해석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설계와 해석은 설문조사에서 뿐만 아니라 모든 분석 프로세스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설문조사의 경우 조사 목적에 맞춰서 정확한 답변이 나올 수 있도록 매우 신중하게 설계해야할 필요성이 있고, 해석에 있어서도 가급적 주관적인 생각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경찰 청렴도 측정을 위한 모형개발은 여러 가지 용도로 활용될 수 있다. 구체적인 활용방안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 청렴도 향상을 위한 과학적 정보의 산출

첫째, 매년 정기적으로 전국의 경찰서를 대상으로 부패수준 조사를 함으로써 반부패 정책 추진을 위한 경쟁적 분위기를 조장하고, 조사결과 정보의 환류(feedback)를 통해 지방경찰청별로 자발적인 부패방지 노력을 기울이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즉, 기관별·업무별로 부패방지를 위한 과학적 정보의 산출을 통해 정책적 활용을 강구할 수 있다. 경찰청렴도 조사는 민원인과 서비스 수혜자를 대상으로 부패체감도를 조사하는 것 이외에 객관적 통계자료를 보완한다는 점에서 장점을 지닌다.

둘째, 특정 연도, 특정 시점에서의 분야별 청렴도 수준 측정은 경찰업무 중 부패취약 분야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해 준다. 이를 토대로 연도별 누적·비교자료를 통하여 연도별 청렴도 추이 및 상황분석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정보 및 자료는 경찰서간 분야별 청렴성 진단과 자율적인 맞춤형 부패방지 대책수립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3. 제도적·정책적 활용방안

첫째, 개발된 모델을 적용한 경찰관서 청렴도 측정 결과 도출된 정보를 환류하여 기관장 인사자료 및 성과급 차등화 등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매년 청렴도 측정결과 정보를 인사자료 및 성과급 지급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경찰관서의 관심도를 제고하여 자발적인 부패척결 노력을 기울이게 함으로써 자정노력을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청렴도 순위가 높게 나타나는 경찰서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차년도부터 전년도에 비하여 청렴도 순위가 크게 개선된 경찰서에 대해서도 시상과 표창을 할 수도 있을 것

이다.

둘째, 국민원익위원회의 청렴도 측정에 대비하여 경찰청 자체의 사전 평가를 통해 지속적인 문제점 진단 및 개선방안 도출이 가능해 짐으로써 청렴위 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기록할 수 있다는 점이다. 비교대상 청단 위 기관 중 높은 청렴도 순위를 기록할 경우 대국민 인식도 개선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조사결과는 해당 경찰관서의 부패정도 및 치안활동 자료로 활용함으로써 지방경찰청간 반부패 제도개선과 실천을 이행케 하는 장치로써 유용하게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넷째, 청렴도 측정결과 청렴지수가 낮은 업무분야 및 경찰서에 대하여는 각각 청렴도 향상대책을 수립하여 보고하도록 해당 경찰서에 의무화 하고, 그 결과를 소속기관 평가에 반영하여 활용하도록 한다. 또한 기관 평가 결과에 따라 시간외 수당 등에 대한 예산을 차등하여 배분함으로써 기관별 청렴 확보를 위한 노력을 촉구하는 수단으로 활용토록 한다.

다섯째,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들간(지방경찰청간 또는 경찰서간) 청렴도 지수를 산정하여 이를 상호 비교함으로써 경찰조직 내 경쟁 체제를 구축하도록 한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 경찰조직의 부패방지를 위한 활동노력을 점검해 나갈 수 있다.

- 부패발생 가능성 지수에 대한 연도별 비교를 통해 부패유발요인의 개선정도를 파악
- 기관별 부패발생 가능성 지수와 업무처리과정에서의 실질적 개선 정도를 상호비교하여 사전적 반부패 노력을 규명
- 기관별 부패실태 지수와 사정활동에 의한 부패실태를 상호 비교함으로써 기관내부 비리공직자 적발을 위한 자정노력의 정도를 규명

4. 향후 발전방향

마지막으로 향후 모형 발전방향과 관련하여 몇 가지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1차 년도에는 현재 6개 부패취약 업무분야에 한정하여 측정하지만 점차 확대하여 경찰업무 전 분야에 걸쳐 투명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차원으로 접근해야 한다. 이를 위해 향후 조사·수사분야 등 다른 업무분야로 확대시키고, 평가대상기관도 경찰서 단위만 할 것이 아니라 16개 지방경찰청에 대한 평가로도 확산시켜 나가도록 한다.

둘째, 평가모형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1차년도 측정결과를 토대로 평가지표체계, 가중치 부여방법 등 모형의 신뢰도를 보다 제고시키도록 모형의 개선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자료수집방법과 측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특히, 초기 개발된 조사모형을 토대로 지속적으로 조사하여 시계열적인 부패발생 실태 및 발생 가능성 등 부패를 둘러싼 문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반부패활동의 방향을 수립해 나가도록 한다.

셋째, 시계열적 누적자료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경찰행정 고객만족도 조사’와 연계하여 정책적으로 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넷째, 국민권익위원회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강화하여 경찰청렴도 조사와 청렴위의 청렴도 조사간에 유기적인 연동이 가능하도록 상호 협조와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부록 1> 조사자료 수집·표본집단 구성

I. 피평가 기관 협조사항

1. 측정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출

- 의견제출 기한 : 2008. ○. ○

2. 표본관리 등 신뢰도 저해행위 금지

- 자체청렴도 측정결과와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측정대상기관은 표본에 대한 오염행위(민원인·소속 경찰관에 대한 사전 협조전화, 강압적 협조 지시 등) 금지

3. 측정업무별 명부 제출관련 협조

- 대민청렴도 및 내부 청렴역량도 명부 제출 기간 : ' 08. ○. ○ ~ ' 08. ○. ○
- 대민 업무 청렴도 민원인 명부 작성 참고

구 분	세 부 내 용
대상기간	- 전년도. 7. 1 ~ 당해년도. 6. 30(12개월간)
명부필수 기재사항	- 민원처리일자, 민원인 성명, 전화번호 - 대리/대행인(변호사·변리사·관세사·설계사·건축시공자 등)이 있는 경우 민원인과 대리/대행인 모두 제출 - 중복민원인은 민간조사기관에서 제외할 예정이므로 전체 처리건수 기준으로 제출
명부형식	- 제출표본 누락 방지를 위해 원칙상 처리대장 복사본을 제출 - 전산DB가 구축된 경우 일괄출력 또는 전산파일로 제출 가능
제출방법	- 이메일(chamlee@police.go.kr), 사송 또는 택배 - 지방경찰청에서 평가대상 소속 경찰관서의 명부를 일괄 취합하여 제출

○ 내부업무청렴도 측정을 위한 직원명부 작성

구 분	세 부 내 용
명 부 형 식	- 붙임 2의 양식에 따라 엑셀 파일 로 작성 제출
제 출 방 법	- 이메일(chamlee@ police.go.kr), 사송 또는 택배 - 측정대상기관 단위로 지방경찰청에서 일괄 취합하여 제출

○ 측정업무별 민원인명부 제출

구 분	세 부 내 용
대상기간	- 2007. 7. 1 ~ 2008. 6. 30(12개월)
명부필수 기재사항	- 민원처리일자, 민원인 성명, 전화번호 - 대리/대행인(변호사변리사관세사설계사건축시공자 등이 있는 경 우 민원인과 대리/대행인 모두 제출 - 중복민원인은 민간조사기관에서 제외할 예정이므로 전체 처리건수 기준으로 제출
명부형식	- 제출표본 누락 방지를 위해 원칙상 처리대장 복사본을 제출 - 전산DB가 구축된 경우 일괄출력 또는 전산파일로 제출 가능 - 양식에 의거 작성한 Excel 파일로 필히 제출 병행 <붙임1-2-3-4> 양식 참조
제출방법	- 이메일, 사송 또는 택배 - 측정대상 경찰서에서 일괄 취합하여 제출
제출시한	- 2008. ○. ○

□ 제출부수 : 각 2 부

- 관련자료는 각 경찰서 감사부서에서 수합하여 소속 지방청 감사관실
에 제출 후 본청 감사관실로 제출

□ 작성요령

- 모든 제출자료는 각 경찰서별로 관리하고 있는 민원처리대장, 지도점
검 및 단속 명부, 기타명부를 최대한 활용하여 사본 및 출력명부를 제

출하되 업무분야별로 구분, 작성하고 **민원인명, 전화번호** 필히 기재

- 민원인명부에 민원인 전화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민원신청서, 전화번호부(Hanmir 전화번호 찾기 등) 등에서 검색하여 기재(법인, 업체의 경우는 가능한 방문민원인 성명 기재), **동일민원인 명부는 1건으로 작성**

○ 총괄현황(표)을 작성후 각 대민업무분야별 명부 등 첨부 제출

II. 자료 제출서식

<붙임 1> 총 괄 (○○경찰서)

기관명	측정대상업무	성격	건 수
○○ 경찰서	교통사고 조사	조사	
	유해업소 단속	지도단속	
	음주, 무면허 단속	지도단속	
	총포, 도검, 화약류 등 소지허가	인허가	
	계약및관리(물품, 용역, 공사)	계약	
	경비업 허가 및 갱신	인허가	

<붙임 2> 대민업무별 명부 작성양식(표지)

측정기관명	경찰청 감사관실(예시)	
측정업무명	유해업소 지도단속(예시)	
자료제출기관	○○지방경찰청 ○○경찰서(예시)	
제 출 건 수	총 건 수 : 1,234 건 명부매수 : 234 매	
제출명부 특이사항	전화번호 기재상태 등 명부의 특이사항을 기재하고, 특이사항이 없는 경우 공란 처리	
제 출 자	소 속	○○경찰서
	직위(급)	담당(경위)
	성 명	홍 길 동
	연 락 처	031-123-4567

※ 표지는 대민업무별 자료제출기관 단위로 작성

<붙임 3> 측정대상 업무별 명부 작성양식

○○○ 업무 민원인명부

일 련 번 호	세 부 업 무 명	민 원 처 리 일	금 액	불 이 익 처 분 여 부	민원인			대리/대행인		
					기 관 명 (업 체 명)	성 명	전 화 번 호	기 관 명 (업 체 명)	성 명	전 화 번 호
1										
2										
3		이		하		생		략		

※ 측정대상업무별 해당항목 기입

<작성요령>

1. 세부업무명은 측정대상업무를 세부업무로 구분하여 기재(가능한 경우)
 - 예시1 : “계약 및 관리업무”의 경우 구매, 용역, 공사로 구분
 - 예시2 : “총포, 도검, 화약류 등 소지허가”의 경우 허가, 등록, 신고로 구분
2. 민원처리일은 신고일, 등록일, 허가일 등 처리일자 기재
3. 금액은 계약 및 관리 등 재정지출과 관련된 업무에 해당
4. 불이익처분 여부는 해당업무와 관련하여 규제·단속, 불허가, 검사탈락 등 민원인에게 불이익 처분을 내린 경우 ○으로 표시(불이익을 주는 처분이 없었던 경우에는 공란으로 비워둠)
5. 기관·업체명은 개인인 경우 작성치 않음
6. 민원인 성명은 민원인 개인성명이나 기관·업체의 업무담당자 기재

7. **대리/대행인**은 인허가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자(변리사, 변호사, 노무사, 관세사, 건축시공자 등)가 있는 경우 민원인과 대리인을 함께 기재
8. **처리명부**는 **엑셀프로그램으로 작성된 파일을 반드시 제출**하되, 복사본이 있는 경우 함께 제출(불가능한 경우 아래 한글 프로그램 사용)
9. 양식크기 및 형식 : A4, 종 또는 횡

※ **유의사항** : 조달청 또는 인터넷을 통해 물품을 구매한 경우에는 작성 제외

<붙임 4> 내부업무 청렴역량도 측정을 위한 명부 작성양식**내부업무 청렴역량도 측정을 위한 직원명부**

번호	소속	직급	성명	성별	근무 년수	e-mail주소	전화번호 (경비) (핸드폰)
1	○○경찰서 ○○과	경 사	홍길동	남	17	kildong@police.go.kr	031-123-4567 016-124-5678
2							
3							

<작성요령>

1. 직원명부는 엑셀프로그램으로 작성하여 제출
 - ※ 계약직, 일용직, 파트타임 등 비정규직원은 제외
2. 관서별 기능(부서) 건제순·각 부서별 높은 직급 순으로 작성하여 일련번호 부여
3. 소속은 “○○경찰서 ○○과” 로 표기
4. 직급은 경정, 경감, 경위, 경사, 경장, 순경 등으로 표시
5. 근무년수는 총 경찰 근무년수
6. e-mail주소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mail주소 기재
7. 전화번호는 조사기간 중 본인과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기재

지금부터는 ○○경찰서의 다른 업무는 생각하지 마시고, △△업무를 처리하시면서 경험하신 내용에 한해서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제도 측면에 대한 인지도

문 1) 선생님께서는 △△업무를 처리했을 때 적용하는 기준과 절차가 지키기에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적으로 그렇다	상당히 그렇다	다소 그런 편이다	보통	별로 그렇지 않은 편이다	거의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2	3	4	5	6	7

문 2) 선생님께서는 △△업무 처리시 업무처리기준이나 진행절차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처리내용을 담당 경찰이 잘 알려주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적으로 그렇다	상당히 그렇다	다소 그런 편이다	보통	별로 그렇지 않은 편이다	거의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2	3	4	5	6	7

문 3) 선생님께서는 △△업무 처리시 적용했던 업무처리기준과 진행절차가 이해하기 쉬울 정도로 명확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적으로 그렇다	상당히 그렇다	다소 그런 편이다	보통	별로 그렇지 않은 편이다	거의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2	3	4	5	6	7

문 4) 선생님께서는 △△업무 처리시 담당 경찰이 불필요한 서류나 조건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없었습니까?

전적으로 그렇다	상당히 그렇다	다소 그런 편이다	보통	별로 그렇지 않은 편이다	거의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2	3	4	5	6	7

부패통제 측면에 대한 인지도

문 5) 선생님께서는 △ △ 업무 처리과정에 불만이 있을 때 이의를 제기하기가 쉬웠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적으로 그렇다	상당히 그렇다	다소 그런 편이다	보통	별로 그렇지 않은 편이다	거의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2	3	4	5	6	7

문 6) 선생님께서는 △ △ 업무 처리과정에 비리가 있을 경우, 경찰서나 경찰청에 신고할 수 있는 여건이 잘 조성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전적으로 그렇다	상당히 그렇다	다소 그런 편이다	보통	별로 그렇지 않은 편이다	거의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2	3	4	5	6	7

문 7) 선생님께서는 지난 1년간 ○ ○ 경찰서 △ △ 업무 처리과정에서의 부정부패를 없애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적으로 그렇다	상당히 그렇다	다소 그런 편이다	보통	별로 그렇지 않은 편이다	거의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2	3	4	5	6	7

업무처리 환경에 대한 인지도

문 8) 선생님께서는 △ △ 업무를 수월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법규를 지키는 것과는 별개로, 담당경찰관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전적으로 그렇다	상당히 그렇다	다소 그런 편이다	보통	별로 그렇지 않은 편이다	거의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2	3	4	5	6	7

문 9) 선생님께서는 △ △ 업무처리시 경찰관들에게 떡값이나 수고비조로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는 것이 오랜 관행으로 되어 있어 이를 거부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전적으로 그렇다	상당히 그렇다	다소 그런 편이다	보통	별로 그렇지 않은 편이다	거의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2	3	4	5	6	7

문 10) 선생님께서는 △ △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정상적인 업무처리과정 이외에 비공식적인 면담이 필요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전적으로 그렇다	상당히 그렇다	다소 그런 편이다	보통	별로 그렇지 않은 편이다	거의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2	3	4	5	6	7

경찰공무원의 행태 및 태도에 대한 인지도

문 11) 선생님께서는 △△업무 담당 경찰관들이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전반적으로 재량권을 과다 행사하거나 권한범위를 벗어나 자의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단속이나 민원처리절차를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적용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적으로 그렇다	상당히 그렇다	다소 그런 편이다	보통	별로 그렇지 않은 편이다	거의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2	3	4	5	6	7

문 12) 선생님께서는 △△업무 담당 경찰관들이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기를 원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적으로 그렇다	상당히 그렇다	다소 그런 편이다	보통	별로 그렇지 않은 편이다	거의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2	3	4	5	6	7

문 13) 선생님께서는 △△업무 담당 경찰관들이 업무처리시 법령상 규정 등을 근거로 업무처리를 지연시키거나 처리하지 않는 것은 사실상 금품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전적으로 그렇다	상당히 그렇다	다소 그런 편이다	보통	별로 그렇지 않은 편이다	거의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2	3	4	5	6	7

부패수준에 대한 개인적 인지도

문 14) 선생님께서는 지난 1년간 ○○경찰서 경찰관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한 경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1) 있었다 (☞ 문 14-1과 문 14-2, 문 14-3으로 가세요)
 2) 없었다 (☞ 문 15로 바로 가세요)

문 14-1) 그럼, 몇 번이나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셨습니다?

- 1) 1번 2) 2번 3) 3번 4) 4~5번
 5) 6~7번 6) 8~9번 7) 10번 이상 8) 말할 수 없다

문 14-2) 지난 1년간 제공한 금품이나 향응의 규모는 모두 합해서 얼마 정도 됩니까?
 (1인당 3만원 이하의 간소한 식사는 제외하고 말씀해 주십시오)

- 1) 5만원 이하 2) 6~15만원 3) 16~30만원
 4) 31~50만원 5) 51~100만원 6) 101~200만원
 7) 201만원 이상 8) 말할 수 없다

문 14-3) 금품이나 향응 제공이 업무처리에 어느 정도 효과를 가져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전적으로 그렇다	상당히 그렇다	다소 그런 편이다	보통	별로 그렇지 않은 편이다	거의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2	3	4	5	6	7

문 15) 선생님께서는 △△업무처리 과정에서 담당 경찰관들의 부패수준이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개선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전적으로 그렇다	상당히 그렇다	다소 그런 편이다	보통	별로 그렇지 않은 편이다	거의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2	3	4	5	6	7

문 16) 혹시 경찰청 및 △△업무분야와 관련한 부패척결에 대해서 고견이 있으시다면 자유롭게 말씀해 주십시오. (면접원 기술)

통계분석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일반적 특성

다음은 통계처리를 위한 질문이오니 조금도 개의치 마시고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DQ1) 성 별 1) 남 2) 여

DQ2) ○○님의 연령대는 어떻게 되십니까?

- 1) 20대 2) 30대 3) 40대 4) 50대 5) 60세 이상

DQ3) ○○님께서 일하시는 회사나 업소는 다음 주 어디에 속하십니까?

- 1) 자영업 (DQ4)로 갈 것)
 2) 법인 (DQ4)로 갈 것)
 3) 개인(비사업자)

DQ4) 선생님께서 종사하고 계신 업종은 다음 중 무엇입니까?

- 1) 농수산업 2) 제조업 3) 건설업
 4) 도·소매업 5) 숙박·위생업 6) 운수·창고·통신업
 7) 교육·연구 8) 금융·보험업 9) 보건·의료업
 10) 사회복지 11) 공공행정 12) 기타 _____

대단히 감사합니다

면접원 기록사항

응답자 인적사항	성명 :	전화번호 :
면접원 ID		
검증원 ID		

[II.○○년도 경찰관서 내부 청렴역량도 조사]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에서는 경찰청 감사관실과 함께 '경찰관서 내부 청렴역량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는 귀하께서 속한 경찰서의 직원 청렴도를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해 실시되고 있습니다. 귀하는 소속 경찰서에서 무작위로 선정되었으며, 귀하의 귀중한 응답은 □□경찰서의 내부 청렴도를 개선하는데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 조사에 포함된 질문에는 맞고 틀리는 답이 있는 것이 아니며, 응답해 주신 내용은 통계를 내는 데만 사용되고 그 외의 목적에는 절대로 사용되는 일이 없으니 '평소 느끼시는 바'를 기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귀하의 개인정보 및 평가내용에 관한 모든 정보는 절대 공개되지 않으니 안심하시고 기간 내에 책임감 있는 평가를 부탁드립니다.

<p>먼저, 자료 분류를 위해 귀하의 신상에 대해 몇가지 여쭙어 보겠습니다.</p>	<p>DQ3) 귀하의 현재 직급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① 경정 ② 경감 ③ 경위 ④ 경사 ⑤ 경장 ⑥ 순경 ※ 계약직이나 기능직, 파견직, 비정규직 → 조사중단</p>																		
<p>DQ1) 현재 귀하가 소속된 경찰서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① 1급지 ② 2급지 ③ 3급지</p>	<p>DQ4) 귀하는 경찰로 얼마나 오랫동안 재직 하셨습니다? ① 1년 이하 → 조사중단 ② 1년 초과(1년 1개월 이상) → DQ4-1)로 갈 것</p>																		
<p>DQ2) 귀하의 소속 직제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h colspan="2">지 방 경 찰 청</th> </tr> <tr> <td>① 서울</td><td>② 부산</td> </tr> <tr> <td>③ 대구</td><td>④ 인천</td> </tr> <tr> <td>⑤ 광주</td><td>⑥ 대전</td> </tr> <tr> <td>⑦ 울산</td><td>⑧ 경기</td> </tr> <tr> <td>⑨ 강원</td><td>⑩ 충북</td> </tr> <tr> <td>⑪ 충남</td><td>⑫ 전북</td> </tr> <tr> <td>⑬ 전남</td><td>⑭ 경북</td> </tr> <tr> <td>⑮ 경남</td><td>⑯ 제주</td> </tr> </table>	지 방 경 찰 청		① 서울	② 부산	③ 대구	④ 인천	⑤ 광주	⑥ 대전	⑦ 울산	⑧ 경기	⑨ 강원	⑩ 충북	⑪ 충남	⑫ 전북	⑬ 전남	⑭ 경북	⑮ 경남	⑯ 제주	<p>DQ4-1) 그럼, 경찰로 재직한 기간은 총 몇 년입니까?(1년 1개월에서 1년 11개월은 2년으로 기입해 주십시오.) 총 근무년수 [만 _____ 년]</p>
지 방 경 찰 청																			
① 서울	② 부산																		
③ 대구	④ 인천																		
⑤ 광주	⑥ 대전																		
⑦ 울산	⑧ 경기																		
⑨ 강원	⑩ 충북																		
⑪ 충남	⑫ 전북																		
⑬ 전남	⑭ 경북																		
⑮ 경남	⑯ 제주																		
<p>DQ2-2) 귀하의 현 근무지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① 경찰청 ② 면허관리단 ③ 경찰대학 ④ 경찰병원 ⑤ 중앙경찰학교 ⑥ 경찰종합학교 ⑦ 수사연수원 ⑧ 지방경찰청 ⑨ 경찰서 ⑩ 지구대 ⑪ 치안센터</p>	<p>DQ5) 귀하의 담당업무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1가지만) ① 경무·기획 ② 생 활안전 ③ 수사 ④ 형사 ⑤ 경비 ⑥ 교통 ⑦ 정보 ⑧ 보안 ⑨ 공보 ⑩ 의사 ⑪ 감사 ⑫ 정보통신 ⑬ 총무/관리 ⑭ 기타(_____)</p>																		

<p>DQ6) 귀하의 근무형태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① 내근 ② 외근</p> <p>DQ7) 귀하의 근무교대 형태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지구대 근무자만) ① 4조2교대 ② 3조1교대 ③ 3조2교대 ④ 3조2교대 교육형</p> <p>DQ8)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 남 ② 여</p> <p>DQ9) 귀하의 연령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만 나이 기준) ① 20~29세 ② 30~39세 ③ 40~49세 ④ 50대 이상</p> <div style="background-color: yellow; padding: 5px; margin: 10px 0;"> <p>그럼, 지금부터 본 설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하께서 지난 1년간 귀 기관의 부패방지 제도 구축·운영, 부패통제, 조직문화, 공직자행태·인사 투명성에 대해 느끼신 점에 대하여 솔직히 응답해 주시면 됩니다.</p> </div> <p>문 1) 귀하는 귀 기관 구성원(간부 및 일반 직원)들의 부패를 방지하고, 청렴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정한 행동(윤리)강령 등의 행동기준이 얼마나 구체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전혀 그렇지 않다</td> <td>거의 그렇지 않다</td> <td>별로 그렇지 않은 편이다</td> <td>보통</td> <td>다소 그런 편이다</td> <td>상당히 그렇다</td> <td>전적으로 그렇다</td> </tr> <tr> <td>①</td> <td>②</td> <td>③</td> <td>④</td> <td>⑤</td> <td>⑥</td> <td>⑦</td> </tr> </table>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다소 그런 편이다	상당히 그렇다	전적으로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p>문 2) 귀하는 귀 기관의 감사계획 수립과 공직기강 점검계획, 일상감사 지침 제정 등이 기관별 특성을 반영하고 조직내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중점감사 등이 감사계획에 얼마나 구체적으로 반영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전혀 그렇지 않다</td> <td>거의 그렇지 않다</td> <td>별로 그렇지 않은 편이다</td> <td>보통</td> <td>다소 그런 편이다</td> <td>상당히 그렇다</td> <td>전적으로 그렇다</td> </tr> <tr> <td>①</td> <td>②</td> <td>③</td> <td>④</td> <td>⑤</td> <td>⑥</td> <td>⑦</td> </tr> </table> <p>문 3) 귀하는 귀 기관이 구성원(간부 및 일반 직원)들의 부패를 방지하고, 청렴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정한 행동(윤리)강령 등의 행동기준을 얼마나 실효성있게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전혀 그렇지 않다</td> <td>거의 그렇지 않다</td> <td>별로 그렇지 않은 편이다</td> <td>보통</td> <td>다소 그런 편이다</td> <td>상당히 그렇다</td> <td>전적으로 그렇다</td> </tr> <tr> <td>①</td> <td>②</td> <td>③</td> <td>④</td> <td>⑤</td> <td>⑥</td> <td>⑦</td> </tr> </table> <p>문 4) 귀하는 귀 기관이 조직내 부패행위에 대한 내부고발제도 및 고발자 보호장치를 얼마나 실효성있게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전혀 그렇지 않다</td> <td>거의 그렇지 않다</td> <td>별로 그렇지 않은 편이다</td> <td>보통</td> <td>다소 그런 편이다</td> <td>상당히 그렇다</td> <td>전적으로 그렇다</td> </tr> <tr> <td>①</td> <td>②</td> <td>③</td> <td>④</td> <td>⑤</td> <td>⑥</td> <td>⑦</td> </tr> </table>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다소 그런 편이다	상당히 그렇다	전적으로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다소 그런 편이다	상당히 그렇다	전적으로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다소 그런 편이다	상당히 그렇다	전적으로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다소 그런 편이다	상당히 그렇다	전적으로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다소 그런 편이다	상당히 그렇다	전적으로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다소 그런 편이다	상당히 그렇다	전적으로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다소 그런 편이다	상당히 그렇다	전적으로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p>문 5) 귀하는 귀 기관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각종 지시나 알선·청탁 등이 발생했을 때 이를 상담·해결할 수 있는 제도(예:행동강령책임관)를 얼마나 실효성 있게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r> <td>전혀 그렇지 않다</td> <td>거의 그렇지 않다</td> <td>별로 그렇지 않은 편이다</td> <td>보통</td> <td>다소 그런 편이다</td> <td>상당히 그렇다</td> <td>전적으로 그렇다</td> </tr> <tr> <td>①</td> <td>②</td> <td>③</td> <td>④</td> <td>⑤</td> <td>⑥</td> <td>⑦</td> </tr> </table> <p>문 6) 귀하는 귀 기관이 자신 또는 4촌 이내의 친족 등이 직무관계자에 해당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공익과 사익간의 이해관계 충돌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예:직무 회피, 제척 등)를 얼마나 실효성 있게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r> <td>전혀 그렇지 않다</td> <td>거의 그렇지 않다</td> <td>별로 그렇지 않은 편이다</td> <td>보통</td> <td>다소 그런 편이다</td> <td>상당히 그렇다</td> <td>전적으로 그렇다</td> </tr> <tr> <td>①</td> <td>②</td> <td>③</td> <td>④</td> <td>⑤</td> <td>⑥</td> <td>⑦</td> </tr> </table> <p>문 7) 귀하는 귀 기관이 △△ 업무처리 시 업무처리 기준과 절차가 잘 공개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r> <td>전혀 그렇지 않다</td> <td>거의 그렇지 않다</td> <td>별로 그렇지 않은 편이다</td> <td>보통</td> <td>다소 그런 편이다</td> <td>상당히 그렇다</td> <td>전적으로 그렇다</td> </tr> <tr> <td>①</td> <td>②</td> <td>③</td> <td>④</td> <td>⑤</td> <td>⑥</td> <td>⑦</td> </tr> </table> <p>문 8) 귀하는 귀 기관이 직원 또는 부서평가 시 업무처리과정의 청렴성(전반적인 청렴도)을 얼마나 잘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r> <td>전혀 그렇지 않다</td> <td>거의 그렇지 않다</td> <td>별로 그렇지 않은 편이다</td> <td>보통</td> <td>다소 그런 편이다</td> <td>상당히 그렇다</td> <td>전적으로 그렇다</td> </tr> <tr> <td>①</td> <td>②</td> <td>③</td> <td>④</td> <td>⑤</td> <td>⑥</td> <td>⑦</td> </tr> </table>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다소 그런 편이다	상당히 그렇다	전적으로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다소 그런 편이다	상당히 그렇다	전적으로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다소 그런 편이다	상당히 그렇다	전적으로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다소 그런 편이다	상당히 그렇다	전적으로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p>문 9) 귀하는 귀 기관의 업무처리시 금품·향응의 수수·청탁·알선 등이 얼마나 관행화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r> <td>전혀 그렇지 않다</td> <td>거의 그렇지 않다</td> <td>별로 그렇지 않은 편이다</td> <td>보통</td> <td>다소 그런 편이다</td> <td>상당히 그렇다</td> <td>전적으로 그렇다</td> </tr> <tr> <td>①</td> <td>②</td> <td>③</td> <td>④</td> <td>⑤</td> <td>⑥</td> <td>⑦</td> </tr> </table> <p>문 10) 귀하는 귀 기관의 구성원(간부 및 일반 직원)들이 직장 내 생활 및 업무 추진에 있어서 공·사 구분을 얼마나 명확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r> <td>전혀 그렇지 않다</td> <td>거의 그렇지 않다</td> <td>별로 그렇지 않은 편이다</td> <td>보통</td> <td>다소 그런 편이다</td> <td>상당히 그렇다</td> <td>전적으로 그렇다</td> </tr> <tr> <td>①</td> <td>②</td> <td>③</td> <td>④</td> <td>⑤</td> <td>⑥</td> <td>⑦</td> </tr> </table> <p>문 11) 귀하는 귀 기관 내에서 금품·향응 수수나 청탁·알선 등의 부패행위에 대한 관대한 처벌을 귀 기관의 구성원(간부 및 일반 직원)들이 얼마나 용인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r> <td>전혀 그렇지 않다</td> <td>거의 그렇지 않다</td> <td>별로 그렇지 않은 편이다</td> <td>보통</td> <td>다소 그런 편이다</td> <td>상당히 그렇다</td> <td>전적으로 그렇다</td> </tr> <tr> <td>①</td> <td>②</td> <td>③</td> <td>④</td> <td>⑤</td> <td>⑥</td> <td>⑦</td> </tr> </table> <p>문 12) 귀하는 귀 기관의 각종 의사결정이나 업무수행시 공무원행동강령 등의 윤리규정을 얼마나 잘 준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r> <td>전혀 그렇지 않다</td> <td>거의 그렇지 않다</td> <td>별로 그렇지 않은 편이다</td> <td>보통</td> <td>다소 그런 편이다</td> <td>상당히 그렇다</td> <td>전적으로 그렇다</td> </tr> <tr> <td>①</td> <td>②</td> <td>③</td> <td>④</td> <td>⑤</td> <td>⑥</td> <td>⑦</td> </tr> </table>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다소 그런 편이다	상당히 그렇다	전적으로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다소 그런 편이다	상당히 그렇다	전적으로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다소 그런 편이다	상당히 그렇다	전적으로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다소 그런 편이다	상당히 그렇다	전적으로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다소 그런 편이다	상당히 그렇다	전적으로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다소 그런 편이다	상당히 그렇다	전적으로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다소 그런 편이다	상당히 그렇다	전적으로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다소 그런 편이다	상당히 그렇다	전적으로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다소 그런 편이다	상당히 그렇다	전적으로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다소 그런 편이다	상당히 그렇다	전적으로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다소 그런 편이다	상당히 그렇다	전적으로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다소 그런 편이다	상당히 그렇다	전적으로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p>문13) 귀하는 귀 기관이 민원인의 업무처리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에 대하여 공정한 처리절차와 충분한 검토를 거쳐 얼마나 성실하게 처리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r> <td>전혀 그렇지 않다</td> <td>거의 그렇지 않다</td> <td>별로 그렇지 않은 편이다</td> <td>보통</td> <td>다소 그런 편이다</td> <td>상당히 그렇다</td> <td>전적으로 그렇다</td> </tr> <tr> <td>①</td> <td>②</td> <td>③</td> <td>④</td> <td>⑤</td> <td>⑥</td> <td>⑦</td> </tr> </table>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다소 그런 편이다	상당히 그렇다	전적으로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p>문17) 귀하는 귀 기관의 기관장이 자체감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얼마나 개선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r> <td>전혀 그렇지 않다</td> <td>거의 그렇지 않다</td> <td>별로 그렇지 않은 편이다</td> <td>보통</td> <td>다소 그런 편이다</td> <td>상당히 그렇다</td> <td>전적으로 그렇다</td> </tr> <tr> <td>①</td> <td>②</td> <td>③</td> <td>④</td> <td>⑤</td> <td>⑥</td> <td>⑦</td> </tr> </table>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다소 그런 편이다	상당히 그렇다	전적으로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다소 그런 편이다	상당히 그렇다	전적으로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다소 그런 편이다	상당히 그렇다	전적으로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p>문14) 귀하는 귀 기관이 자체사고의 축소·묵살을 방지하기 위해 얼마나 개선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r> <td>전혀 그렇지 않다</td> <td>거의 그렇지 않다</td> <td>별로 그렇지 않은 편이다</td> <td>보통</td> <td>다소 그런 편이다</td> <td>상당히 그렇다</td> <td>전적으로 그렇다</td> </tr> <tr> <td>①</td> <td>②</td> <td>③</td> <td>④</td> <td>⑤</td> <td>⑥</td> <td>⑦</td> </tr> </table>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다소 그런 편이다	상당히 그렇다	전적으로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p>문18) 귀하는 귀 기관의 자체감사 결과가 조직·인사관리 운영 및 제도개선에 얼마나 잘 반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r> <td>전혀 그렇지 않다</td> <td>거의 그렇지 않다</td> <td>별로 그렇지 않은 편이다</td> <td>보통</td> <td>다소 그런 편이다</td> <td>상당히 그렇다</td> <td>전적으로 그렇다</td> </tr> <tr> <td>①</td> <td>②</td> <td>③</td> <td>④</td> <td>⑤</td> <td>⑥</td> <td>⑦</td> </tr> </table>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다소 그런 편이다	상당히 그렇다	전적으로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다소 그런 편이다	상당히 그렇다	전적으로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다소 그런 편이다	상당히 그렇다	전적으로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p>문15) 귀하는 귀 기관의 기관장이 반부패 청렴시책 및 공정하고 투명한 조직관리 운영을 위해 얼마나 개선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r> <td>전혀 그렇지 않다</td> <td>거의 그렇지 않다</td> <td>별로 그렇지 않은 편이다</td> <td>보통</td> <td>다소 그런 편이다</td> <td>상당히 그렇다</td> <td>전적으로 그렇다</td> </tr> <tr> <td>①</td> <td>②</td> <td>③</td> <td>④</td> <td>⑤</td> <td>⑥</td> <td>⑦</td> </tr> </table>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다소 그런 편이다	상당히 그렇다	전적으로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p>문19) 귀하는 귀 기관의 간부(과장(경정 이상)들이 모든 업무(정책결정, 인·허가, 등 대민업무 및 인사·예산 집행 등 내부 업무)를 얼마나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r> <td>전혀 그렇지 않다</td> <td>거의 그렇지 않다</td> <td>별로 그렇지 않은 편이다</td> <td>보통</td> <td>다소 그런 편이다</td> <td>상당히 그렇다</td> <td>전적으로 그렇다</td> </tr> <tr> <td>①</td> <td>②</td> <td>③</td> <td>④</td> <td>⑤</td> <td>⑥</td> <td>⑦</td> </tr> </table>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다소 그런 편이다	상당히 그렇다	전적으로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다소 그런 편이다	상당히 그렇다	전적으로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다소 그런 편이다	상당히 그렇다	전적으로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p>문16) 귀하는 귀 기관이 조직내 부패발생을 예방할 수 있도록 자체감사체계를 얼마나 실효성 있게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r> <td>전혀 그렇지 않다</td> <td>거의 그렇지 않다</td> <td>별로 그렇지 않은 편이다</td> <td>보통</td> <td>다소 그런 편이다</td> <td>상당히 그렇다</td> <td>전적으로 그렇다</td> </tr> <tr> <td>①</td> <td>②</td> <td>③</td> <td>④</td> <td>⑤</td> <td>⑥</td> <td>⑦</td> </tr> </table>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다소 그런 편이다	상당히 그렇다	전적으로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p>문20) 귀하는 귀 기관의 일반직원(경감 이하)들이 모든 업무(정책결정, 인·허가, 등 대민업무 및 인사·예산 집행 등 내부 업무)를 얼마나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r> <td>전혀 그렇지 않다</td> <td>거의 그렇지 않다</td> <td>별로 그렇지 않은 편이다</td> <td>보통</td> <td>다소 그런 편이다</td> <td>상당히 그렇다</td> <td>전적으로 그렇다</td> </tr> <tr> <td>①</td> <td>②</td> <td>③</td> <td>④</td> <td>⑤</td> <td>⑥</td> <td>⑦</td> </tr> </table>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다소 그런 편이다	상당히 그렇다	전적으로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다소 그런 편이다	상당히 그렇다	전적으로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다소 그런 편이다	상당히 그렇다	전적으로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p>문21) 귀하는 지난 1년 동안 귀 기관의 인사업무와 관련하여 실제로 금품이나 향응의 제공이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r> <td style="width: 12.5%;">전혀 그렇지 않다</td> <td style="width: 12.5%;">거의 그렇지 않다</td> <td style="width: 12.5%;">별로 그렇지 않은 편이다</td> <td style="width: 12.5%;">보통</td> <td style="width: 12.5%;">다소 그런 편이다</td> <td style="width: 12.5%;">상당히 그렇다</td> <td style="width: 12.5%;">전적으로 그렇다</td> </tr> <tr> <td>①</td> <td>②</td> <td>③</td> <td>④</td> <td>⑤</td> <td>⑥</td> <td>⑦</td> </tr> </table> <p>문22) 귀하는 지난 1년 동안 금품이나 향응의 제공에 의하여 귀 기관의 인사결과가 얼마나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r> <td style="width: 12.5%;">전혀 그렇지 않다</td> <td style="width: 12.5%;">거의 그렇지 않다</td> <td style="width: 12.5%;">별로 그렇지 않은 편이다</td> <td style="width: 12.5%;">보통</td> <td style="width: 12.5%;">다소 그런 편이다</td> <td style="width: 12.5%;">상당히 그렇다</td> <td style="width: 12.5%;">전적으로 그렇다</td> </tr> <tr> <td>①</td> <td>②</td> <td>③</td> <td>④</td> <td>⑤</td> <td>⑥</td> <td>⑦</td> </tr> </table> <p>문23) 귀하는 지난 1년간 승진·전보 등 인사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기관 내 상급자나 담당직원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한 경험이 있습니까? 1. 있다 → 문 23-1, 23-2, 23-3으로 갈 것 2. 없다</p> <p>문23-1)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만) 그럼, 귀하가 언제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했는지 다음 중에서 모두 골라주십시오.</p> <p>1. 인사이동 전 2. 인사이동 중 3. 인사이동 후 4. 수시로 5. 명절이나 부처 행사와 같은 특별한 때에 6. 기타(적을 것 : _____)</p>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다소 그런 편이다	상당히 그렇다	전적으로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다소 그런 편이다	상당히 그렇다	전적으로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p>문23-2)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만) 그럼, 귀하가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한 이유가 무엇인지 다음 중에서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골라주십시오.</p> <p>1. 담당직원이 먼저 요구해서 2. 관련 정보수집을 위해 3. 일처리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4. 인사상의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해 5. 제공하는 것이 관행이어서 6. 기타(적을 것 : _____)</p> <p>문23-3) 귀하는 귀 기관의 인사업무와 관련된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개선되었으면 하는 것은 다음 중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p> <p>1. 객관적 성과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2. 투명하고 명확한 인사기준과 절차 마련 및 공개 3. 인사담당자에 대한 교육 강화 4. 기관장의 인사부패 척결 노력 5. 기타(적을 것 : _____)</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background-color: yellow;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margin-top: 10px;"> 지금까지 내부 청렴역량도 조사에 참여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div>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다소 그런 편이다	상당히 그렇다	전적으로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다소 그런 편이다	상당히 그렇다	전적으로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책임연구보고서 2008-02

경찰 관서별 청렴도 평가모형 개발 및 조사설계 연구

발행일 : 2008년 12월 26일

발행인 : 김 길 배

발행처 : **치안정책연구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언동1길 29

홈페이지 : www.psi.go.kr

이 책의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이 책자에 게재된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치안정책연구소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혀드립니다.



POLICE SCIENCE INSTITUTE